

제6장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사기충천한군 문화 정착



제1절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선진병영문화 정착	164
제2절	장병 복지 향상 및 복무 여건 개선	170
제3절	장병 인권보호 강화	182
제4절	국방 문민화 및 청렴한 국방운영	187
제5절	공정한 병역의무 이행 및 국민 편익 증진	192
제6절	제대군인 지원 및 참전용사 예우 강화	201



국군의 날 행사(2018년 10월)

제1절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선진병영문화 정착

우리 군은 지속적인 병영문화 혁신을 추진하여 사건·사고 감소 등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으나, 장병을 자율적 판단의 주체가 아닌 통제의 대상으로 인식하는 등 병영 내 불합리한 관행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시대에 맞는 강한 군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폐쇄적인 군 문화를 개선하고 장병들을 독립된 인격체로 대우해야 한다. 국방부는 장병들의 자율성과 기본권을 보장하여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병영문화 정착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1. 자율과 책임의 병영문화 조성

| 자율과 책임이 조화된 병영 | 군의 기본 임무인 상시 전투준비태세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기강이 바로 선 가운데 일과 시간에는 교육훈련에 집중하고, 일과 이후에는 자기개발과 취미활동 등이 보장되는 자율과 책임이 조화된 병영문화가 정착되어야 한다.

2014년부터 추진해 온 병영문화 혁신을 통해 사건·사고 감소 등 상당 부분 가시적인 성과를 얻었으며, 일반 국민의 긍정적인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반면, 복무 규칙 준수 의지와 임무 수행에 대한 책임의식이 더욱 배양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국방부는 장병들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자율적으로 행동하되, 자신의 행동에 책임질 줄 아는 ‘군복 입은 민주시민’으로서 정해진 제반 규율을 준수하고 부여된 책임을 완수하기 위해 장병 스스로 최선을 다하는 병영문화를 조성해 나갈 것이다.

| 병사 개인휴대폰 사용 | 군 복무로 인한 고립감을 해소하고 자기개발과 건전한 여가선용 등을 위해 시범부대 운영과 다각적인 의견 수렴을 거쳐 병사 개인휴대폰 사용 허용 여부를 결정하였다. 군에서는 외부와의 소통 활성화를 위해 2015년부터 생활관별 수신용 공용휴대전화와 영상 공중전화기를 도입하여 장병들의 고립감과 부모님들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데 긍정적으로 기여하였다.



수신용 공용휴대전화

국방부는 그동안 보안상의 문제, 군 기강 해이 등의 우려로 인해 병영 내에서의 병사 개인휴대폰 사용을 제한했으나, 사회와의 원활한 소통 여건을 보장하기 위해 일과 이후와 휴일에 한하여 개인휴대폰 사용을 허용하되 시범운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면서 전면 시행시기를 판단할 예정이다.

| 평일 일과 후 외출 활성화 | 전투임무 준비를 위한 충분한 휴식과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평일 일과 이후 군사대비태세 유지와 부대별 여건을 고려한 병사 외출 활성화 방안을 검토하였다.

병사의 평일 외출은 현재도 규정상 필요한 경우에는 허용되나 활용도는 낮은 실정이다.¹⁾ 향후에는 지휘관의 승인하에 대비태세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소규모 단결활동, 병원 진료, 가족과의 면회 등 평일 일과 후 외출을 활성화할 예정이다. 국방부에서는 각 군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시범 적용을 거쳐 전·후방 부대별 특성에 맞는 외출 기준을 정립한 이후 군 본연의 임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2019년 2월부터 전면 시행할 예정이다.

| 사적 생활영역 보장 | 헌법으로 보장된 군인의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병영 내에서 사생활 보장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장병에 대한 생활영역 보장 실태를 확인하고, 미흡한 분야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군은 병사의 경우에도 일과 이후에는 영내 출·퇴근 개념을 적용하고, 자치제도를 활성화하는 등 개인 생활이 최대한 보장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나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국방부는 병사의 24시간을 관리 및 통제의 대상으로 인식하는 관행에서 탈피하여 일과 이후에는 영내 출·퇴근 개념을 정착시키고, 간부의 생활관 출입 관련 행동수칙을 제정할 예정이다. 또한 간부들의 양성 과정에서부터 사적 생활영역을 보장하는 등 장차 병영생활 관리자로서 올바른 인식이 형성될 수 있도록 교육을 강화할 예정이다.



병 자치위원회

1) 국방부 「부대관리훈령」 제57조(외출·외박의 구분) 제2항 : “특별외출·외박은 휴일 및 휴일을 포함한 평일에 허가하는 성과제 외출·외박과 수감·포상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과업 중 또는 과업 종료 후 개별적으로 허가하는 외출·외박을 말한다.”



70주년
국군의 날 행사

2. 불합리한 관행과 부조리 척결

| 부조리 척결 활동 강화 | 우리 군은 '가고 싶고, 보내고 싶은' 군대를 만들기 위해 자율성과 주인의식을 제고하는 한편 군 내 불합리한 관행과 부조리로 인해 작은 문제가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또한 장병들의 불만은 생활 여건의 불편함보다는 군 내 잘못된 관행이나 비인격적인 행동에서 주로 비롯된다는 인식도 있다.

국방부는 지휘관과 참모 등 부대운영 지휘·감독 책임계층에 대한 교육과 현장지도를 실시하고, 국방부 주관으로 우수부대를 선발하여 포상하는 등 불합리한 관행과 부조리를 척결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불합리한 관행/부조리 척결 우수부대 포상

| 장병 사적 지시 및 운용 금지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은 상관이라도 직무와 관계가 없거나 권한 밖의 사항에 대해서는 명령할 수 없도록 명시하고 있다.²⁾ 이 규정의 취지에 맞춰 장병에 대한 사적 지시 및 운용 등을 금지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있다.

군은 임무 특성상 엄격한 상명하복의 상하 관계가 유지되어야 한다. 그러나 위법한 명령이나 공적인 영역을 벗어난 지시까지도 무조건 복종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위법한 명령과 지시에는 거부할 수 있는 문화가 정착되어야 한다.

국방부는 사적인 목적을 위해 장병들을 운용하거나 지시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처벌이 가능하도록 국방부 「부대관리훈령」을 개정하여 시행 중이며, 각 군 규정에도 관련 조항을 반영하였다. 더불어 공관 관리병과 각종 테니스병, 골프병 등 복지지원병의 운영을 중단하였고, 군마트 판매병 등 비전투 분야에 종사하는 인원은 민간인력으로 대체해 나갈 예정이다.

| 장병 사역임무 대체 |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 장병들이 전투임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사역 임무는 과감히 줄여 나갈 예정이다.

현재도 일부 부대와 시설을 대상으로 청소 등의 부수적인 업무를 민간에 위탁하여 장병들이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야전부대 장병들은 여전히 전투임무와 직접

2)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24조(명령 발령자의 의무) 제1항 : “군인은 직무와 관계가 없거나 법규 및 상관의 직무 상 명령에 반하는 사항 또는 자신의 권한 밖의 사항에 관하여 명령을 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적으로 관계가 없는 업무 때문에 휴식 시간까지 할애하면서 고단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

국방부는 전방 및 전투부대의 제조, 청소작업 등에 필요한 인원을 민간인력으로 전환할 예정이며, 향후에는 전 부대에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제설에 필요한 장비를 지속적으로 보강할 예정이다.



경계작전을 위한 제조작업

3. 인격과 생명이 존중되는 병영문화 조성

| 올바른 언어 사용 | 인격과 인권을 중시하는 시대 변화에 맞춰 군인다운 올바른 언어 사용을 생활화하여 상호 인격을 존중하고 소통과 배려가 넘치는 풍토를 조성하고 있다.

군 내 각종 사건과 사고의 원인은 폭언, 욕설, 인격모독 등 언어폭력인 경우가 많으며, 언어폭력은 그 자체로도 심각한 인권침해 행위라는 점에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

국방부는 장병들의 올바른 언어 사용 활성화를 위해 병영 언어 지침서와 병영 언어순화 만화책 발간, 국방일보 웹툰 기획연재 등을 추진하였으며, 매년 ‘병영 언어 선도부대’를 운영하여 언어문화 개선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또한 국립국어원과 협업하여 장병들이 ‘찾아가는 국어문화학교’ 강의를 수강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향후에도 ‘밝은 병영문화는 상호 간 존중하고 배려하는 말에서 시작된다’는 믿음으로 장병들이 올바른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병영 언어순화 만화책

| 고충 식별 및 해소 | 장병들이 군 복무를 건강하게 마칠 수 있도록 군 생활에서의 고충을 식별하고, 적기에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자유로운 환경에 익숙한 장병들은 상대적으로 통제된 병영 환경과 단체생활로 인해 고충을 겪거나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다.

국방부는 복무적응에 장애가 되는 요소들을 적극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인성검사를 실시하고, 심리상담과 치유를 위한 병영생활 전문상담관 및 그린캠프, 24시간 고충 상담과 신고가 가능한 국방헬프콜센터, 각종 소원수리제도 등을 운영하고 있다.



병영생활 전문상담관의 장병 상담

[도표 6-1] 연도별 국방헬프콜센터 일일 평균 상담 건수

2018년 11월 기준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상담 건수	47	111	159	176	170

향후에는 보다 예방적인 관점에서 인성검사의 신뢰도 향상, 병영생활 전문상담관 확충(연대급부대 → 대대급부대), 국방헬프콜센터 상담창구 확대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장병들의 복무적응을 지원하고 제반 사건과 사고의 선제적 예방을 위해 한국국방연구원의 전문연구조직과 협업을 강화할 예정이다.

[도표 6-2] 연도별 병영생활 전문상담관 증원 현황

2018년 12월 기준, 단위 : 명

구 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인 원	95	148	207	246	297	346	383	383	522	660

전 장병 자살예방 역량 강화 | 군의 전투력과 국민의 대군 신뢰도를 저하할 수 있는 군 내 자살사고 예방을 위해 전 장병의 자살예방 게이트키퍼(Gate-Keeper)³⁾화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대대급 부대에 자살예방 전담 교관을 양성하고, 전 장병을 대상으로 반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식별-관리-분리 등 3단계의 자살예방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지속적 노력의 결과 군 내 자살사고는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도표 6-3] 연도별 자살예방 전담 교관 양성 현황

2018년 12월 기준, 단위 : 명

구 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인 원	824	1,601	540	434	550	534	653	664	668	822	650

그러나 자살사고는 우리 주변에서 지속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자살자가 보내는 여러 가지 신호들을 함께 근무하는 동료들이 인지하지 못하거나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아 극단적인 상황으로 이어지게 되는 안타까운 일들이 발생하고 있다.

국방부는 효과적인 자살예방 전담 교관 양성을 위해 교육과정을 전문기관에 위탁하였으며, 군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교육콘텐츠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전문 교관을 활용하여 지휘관·참모 등 부

3) 자살 위험에 처한 주변인의 '신호'를 인식하여 '지속적 관심'을 가지고, 그들이 적절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자원(기관, 전문가)에 '연계'하는 사람

대운영 지휘·감독 책임계층을 대상으로 권역별 순회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각 군 차원의 전문 교관을 양성하고, 자살예방 교육은 반드시 지휘관이 동참하는 등 전 장병들의 자살예방 역량 강화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공군본부 자살예방 교육

4. 개인과 문화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병영문화 조성

다문화 가정 출신 장병 등 사회적 소수자들도 차별받지 않고 다른 장병들과 전우로서 더불어 생활할 수 있는 병영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국내에 등록된 외국인이 2008년 85만여 명에서 2017년 117만여 명으로 증가하는 등 우리나라는 이미 다문화 사회로 변화하고 있어 군에서도 이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필요한 시점이다.

국방부는 장병들이 개인과 문화의 다양성을 충분히 이해하고, 잘못된 인식으로 인한 차별적 대우나 구성원 간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종 교육체계와 제도를 점검하여 미흡한 분야를 보완할 수 있는 실효적인 정책을 수립해 나갈 것이다.

제2절 장병 복지 향상 및 복무 여건 개선

열악한 복무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병영생활 환경 및 장병 처우 개선을 지속해서 추진했음에도 불구하고 장병들의 복지 수준은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국방부는 병역의무 이행자에 대한 합리적 보상 등 복무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스스로 가고 싶고, 안심하고 자식을 군에 보낼 수 있는' 병영문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1. 장병 복무 여건의 획기적 개선

| 병 복무에 대한 합리적 보상 | 국방부는 병역의무 이행자에 대한 합리적 보상과 국가책임 강화 차원에서 2018년 1월부터 병 봉급을 전년 대비 87.8% 인상하였다. 이에 따라 병사들은 병영생활 필수경비(25만 9,000원)를 제외하고도 계급별로 매달 4만 원에서 14만 원의 여유자금을 보유하게 되었다.

병 봉급 인상과 연계하여 병사들이 자율 저축을 통하여 전역 시 사회진출의 마중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국군 병사 적금상품 확대를 추진하였다. 2018년 8월에 14개 시중은행과 협약을 체결하여 5% 이상의 높은 금리와 비과세 등의 혜택이 부여되며 월 40만원까지 적립이 가능한 신규 적금상품인 장병내일준비적금을 출시하였다.

또한 군 복무에 대한 보상을 위해 현재 군 복무기간의 6개월만 인정하고 있는 국민연금 군 복무 크레딧을 군 복무기간 전체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장병내일준비적금 출시

| 장애보상금 현실화 | 의무복무 중 불의의 사고로 부상을 입은 병사에게 지급되는 장애보상금은 부상의 정도에만 보상하고 있어 위험한 직무 수행 중 장애를 입은 병사에 대한 추가적인 보상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장애보상금 등급별 지급금액을 대폭 인상하고 장애 발생 원인에 따라 '전상', '특수직무 공상', '일반 장애'로 구분하여, 위험한 직무 수행 중 발생한 부상에 대한 보상을 강화할 계획이다. 「군인연금법 전부개정법률안」과 「군인 재해보상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현행 최소 약 569만 원에서 최대 1,706만 원 수준이던 장애보상금을 최소 약 1,566만 원에서 최대 약 1억 1,745만 원으로 증액하여 지급할 수 있을 것이다.

피복·개인장구류의 품질 개선 | 국방부는 장병의 전투임무 수행능력을 보장하고 병영생활 만족도를 향상하기 위해 피복·장구류의 품질을 개선하려는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전투복은 2011년도에 얼룩무늬 전투복에서 디지털무늬 전투복으로 교체한 후 2013년부터 하계 전투복을 추가 보급하였고, 2018년 하반기부터 신축성과 착용감을 향상하고 적외선 위장성능을 보완하여 새롭게 개선한 전투복을 보급하였다. 또한 가볍고 보온성이 향상된 방한복 상의 내·외피를 2018년부터 단계적으로 보급하고 있다.

한편 2015년부터 장병의 병영생활에 가장 밀접하게 착용하고 사용되는 생활 밀착형 피복류에 대한 품질과 보급 기준을 개선하였다. 운동화 및 모자갑 등의 품질을 개선하고, 속옷류는 장병의 선호도를 고려하여 기능성 러닝셔츠와 드로어즈 팬티를 확대 보급하였다. 향후 개인 전투용 장갑, 액상 세제 등 다양한 생활 밀착형 보급품을 개선할 계획이다.

개인장구류는 대대급 전투력 발휘 여건을 보장하기 위해 2015년까지 부대 단위로 방탄복, 방탄헬멧, 개인천막, 전투배낭, 전투조끼 등을 전 GOP사단(전투부대)까지 보급하였으며, 2020년까지 전투지원부대에 보급을 완료할 예정이다. 또한 전장에서의 장병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방호력과 기능이 개선된 방탄헬멧과 방탄복을 2019년 이후 보급할 예정이다.

향후에도 미래 전장환경에 부합하고 장병 복지가 향상될 수 있도록 피복 및 개인장구류의 연구개발과 품질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개선된 피복 및 개인장구류를 조기에 보급함으로써 군 전투력 강화에 기여할 것이다.

건강하고 안전한 군 급식 | 우리 군은 장병의 건강과 전투력을 유지하기 위해 안전하고 영양이 풍부한 균형 잡힌 급식을 제공하고 있다. 장병들은 교육훈련 등으로 활동량과 체력소모가 많아 일반인 권장

품질 개선 전투복/방한복 상의 연구개발



전투복 상의

전투복 하의



방한복 상의(야전상의) 외피

방한복 상의(야전상의) 내피

생활 밀착형 피복류 품질 개선



개선 운동화

기능성 러닝셔츠



드로어즈 팬티



개선 전투용 장갑(예)

열량 기준인 2,600kcal보다 높은 3,000kcal⁴⁾를 적용한 식단을 편성하고 있으며, 신세대 장병의 선호를 반영한 양질의 급식을 제공하기 위해 장병 기본급식비⁵⁾를 지속적으로 인상하고 있다.

[도표 6-4] 1인 1일 기본급식비 증가율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단가(원)	6,432	6,848	7,190	7,334	7,481	7,855
증가율(%)	4.5	6.5	5.0	2.0	2.0	5.0

2018년도에는 군에서 급식하는 모든 농산물을 우리 농산물로 사용⁶⁾하고 한라봉, 거봉 포도 등 품목도 확대하여 급식의 질을 높였다. 매년 급식 만족도 조사를 통해 장병들의 선호를 고려한 식단을 편성하고 있으며, 한우·갈비·전복·낙지 등 장병들의 선호도가 높은 품목의 급식량은 증량하고 민물장어, 떡갈비, 천연벌꿀 등 16개 품목을 시험 급식품목⁷⁾으로 채택하여 장병들에게 다양한 음식을 제공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2018년부터는 그간 시범사업으로 추진하여 장병들의 만족도가 높았던 ‘급식혁신사업’을 부대별 여건에 따라 전군에 확대 시행하고 있다.⁸⁾ 또한 급식의 맛 개선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민간 조리원을 2020년까지 소대급 규모의 전 취사장까지 확대하여 증원할 계획이다.



[도표 6-5] 민간 조리원 운영 현황

구 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총원(명)	1,373	1,473	1,547	1,586	1,721	1,767	1,841	1,903
증원(명)	187	100	74	39	135	46	74	62
운영 기준 (식수 인원)	180명 이상	150명 이상	140명 이상	130명 이상	120명 이상	110명 이상	100명 이상	90명 이상

- 4) 장병 체위, 군 생활 여건 변화 등을 반영하여 한국국방연구원의 연구를 통해 '장병 영양섭취 기준' 설정
- 5) 주식비, 부식비, 후식비를 포함하는 순수 식자재비
- 6) 국내산 수급이 어려운 경우 제한적으로 선택 급식할 수 있도록 하였던 '수입산' 건 고사리, 간도라지, 명태, 코다리 등을 제외
- 7) 민물장어(순살, 연안), 문어(반가공, 연안), 떡갈비, 간소새우, 천연벌꿀, 피조개살(연안), 자숙 불소라(연안), 통살치킨가스, 돼지 곰탕(레토르트), 텐더 스틱, 계란 프라이, 도토리묵+소스, 매콤 만능양념장, 생선조림 양념장, 탕수육소스, 굴소스
- 8) 브런치 제공, 복수·자율 메뉴 제공 등 부대별 여건에 자율적으로 시행
* 2017년 급식혁신 시범사업 만족도 : 5점 만점에 4.1점(우수)

한편 2014년부터 군납 식품 제조공장에 대한 합동위생점검 현장을 참관하고 장병들의 급식 실태를 확인하는 ‘어머니 모니터링단’을 운용하여 군 급식 수준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어머니 모니터링단 공군 10전투비행단 급식 현장 방문

군 급식은 많은 인원이 동시에 취식하는 특수성으로 인해 식자재 계약부터 급식까지의 단계별 안전과 위생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 식자재 계약 시에는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⁹⁾ 업체를 우대하고, 군납 업체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 등과 합동으로 연 2회 위생 점검 및 하절기 불시 위생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식자재 등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여 회수·폐기하고, 해당 업체는 계약에서 배제하고 있다. 또한 2015년부터는 특정 음식에 알레르기가 있는 병사의 안전을 위해 알레르기 유발식품 표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¹⁰⁾

그리고 식자재 신선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현대화된 장비를 갖춘 군 급식유통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지속 확대하여 급식 안전과 위생 관리를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전라권 급식유통센터
(장성, 2012)

충청권 급식유통센터
(대전, 2016)

경상권 급식유통센터
(대구, 2017)

경기권 급식유통센터
(별내, 2017)

9) 위해 물질이 식품에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각 과정의 위해요소를 사전 확인 평가하는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 Hazard Analysis Critical Control Point)

10) 난류, 우유, 메밀, 땅콩, 대두, 밀, 고등어, 게, 새우, 돼지고기, 복숭아, 토마토, 아황산류, 호두, 닭고기, 쇠고기, 오징어, 조개류



어머니 모니터링단
현장 방문

| 병영생활관 현대화 | 병사들의 생활 여건을 개선하고 쾌적한 병영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국방부는 2003년부터 협소하고 노후된 생활관을 현대화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소대 단위(30~50명) 침상형 구조를 분대 단위(8~10명) 침대형 구조로 변경하고, 1인당 2.3m²이었던 생활면적을 6.3m²로 확장하였다. 세면실, 화장실, 도서관, 체력단련장 등의 위생·편의시설을 생활관 내부로 통합하고 현대식으로 개선하고 있다. 생활관을 침상형에서 침대형 구조로 현대화하는 것은 생활관의 개념을 병사들을 수용하는 공간에서 주거와 생활 공간으로 탈바꿈시킨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동 사업은 「국방개혁 2.0」과 연계한 연차별 개선계획에 따라 2026년 부대개편 완료와 함께 종료되도록 추진하고 있다.



병영생활관 현대화 후

한편 여름철 장병들의 생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2017년 6월부터 모든 병영생활관에 에어컨 3만 5,000여 대를 설치하여 장병들이 시원한 생활관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쾌적한 병영생활 여건을 마련하였다.

해체·이전이 예정된 부대와 같이 병영생활관 현대화 사업이 어려운 부대에는 병영도서관, 사이버지식정보방, 노래연습실, 매점, 이발소 등 각종 편의시설로 이루어진 ‘병영문화쉼터’를 설치하여 장병들이 여가를 건전하게 보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도표 6-6] 병영생활관 현대화 전·후 비교

구 분		현대화 이전	현대화 이후(통합생활관)
병영생활관 내 공간 구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병사 생활실(내무반) • 간부 중대장실, 중대 행정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병사 생활실(내무반), 위생시설, 편의시설 등 • 간부 중대장실, 중대 행정반, 대대참모부 사무실 등
병사 공간	생활실 (내무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0~50명 소대 단위 침상형 • 1인당 2.3m² 	<ul style="list-style-type: none"> • 8~10명 분대 단위 침대형, 에어컨 설치 • 1인당 6.3m²
	위생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활관 외부 별도 건물에 위치 • 샤워실, 군화세척실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면실, 화장실, 목욕탕 등을 현대식으로 개선하여 생활관 내부에 배치 • 샤워실, 군화세척실 신설
	편의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활관 외부 별도 건물에 위치 • 사이버지식정보방, 체력단련장, 탁구장 등은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서관, 사이버지식정보방, 체력단련장 등을 생활관 내부에 신설 또는 확충 • 생활관 내부에 매점을 배치
간부 공간	행정, 작전·훈련 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대장실, 중대행정반만 생활관 내 위치 • 대대 행정시설은 별도 건물로 생활관 외부에 위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휘관실, 참모부 사무실, 지휘통제실, 통신실, 회의실 등 통합생활관 내부에 배치

2. 여군 비중 확대 및 근무 여건 보장

| 여군 비중 확대 | 국방부는 여성의 사회적 역할 증대에 부응하고 우수한 여성인력의 군 내 활용을 위해 여군 비중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다. 2017년 기준 군 내 여군 비중은 5.9%(장교 7.4%, 부사관 5.0%)로 확대되어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2020년 여군 비중 확대목표(장교 7%, 부사관 5%)를 조기에 달성하였다.

이에 2017년 9월 「여군인력 확대 및 근무 여건 개선 계획」을 수립하여 2022년까지 군 간부 중 여군의 비중을 8.8% 이상으로 확대한다는 목표를 설정하였으며, 이를 위해 여군 신규임용 규모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육군특전여군부사관 후보생 공수 기본교육 자격 강하 훈련(2018년 8월)

| 여군 인사관리제도 개선 | 양성평등한 인사관리를 위해 2018년 1월 「국방 인사관리 훈령」을 개정하여 여군 배치 제한부대와 제한직위를 폐지하였다. 이를 통해 각 군에서 남녀 공통으로 적용할 수 있는 ‘중·소·분대장 자격 기준’을 마련하게 함으로써 여군도 차별 없이 모든 부대로 확대 보직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출산 또는 육아 휴직으로 인한 공석 발생 시 대체인력풀을 확대하고 휴직자의 인사상담과 대체인력 보충을 지원하는 전담 직위를 신설하기로 하였다. 앞으로 우수한 여군인력 획득과 더불어 양성평등한 여군하에서 본연의 임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여군 인사관리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할 것이다.

| ‘일·가정’ 양립지원 | 남녀 모두가 혜택을 누리는 일·가정 양립지원을 통해 가족친화적인 군 조직 문화를 개선해 나가고 있다.

임신, 출산, 육아를 지원하기 위해 임신한 여군은 출산 후 1년까지 당직근무를 면제받고, 만 5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군인은 24개월 범위 내에서 1일 2시간의 육아시간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고등학생 이하의 자녀를 둔 군인이 학교 공식행사 등에 참여할 때는 연간 2일의 범위에서 자녀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자녀가 셋 이상일 경우는 연간 3일을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였다. 배우자 출산휴가를 자녀 수에 따라 5~9일을 허용하던 것을 10일로 확대하였으며, 육아휴직 기간의 진급최저복무기간 산입을 확대하여 셋째 자녀 이상만 최대 3년까지 산입되던 것을 둘째 자녀부터 최대 3년까지 산입될 수 있도록 하였다.

아울러 잦은 근무지 이동, 격오지 근무 등으로 인한 양육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군어린이집과 공동육아나눔터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군어린이집은 2017년 125개소에서 2022년까지 164개소로 확충할 계획이며, 어린이집 설치가 어려운 지역에 설치되는 공동육아나눔터는 2017년 22개소에서 2022년

35개소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2018년부터는 정부와 공공기관에 의무화되어 있는 가족친화인증제도¹¹⁾를 군에 도입하여 군부대의 일·가정 양립 시행 수준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가족친화적인 조직문화를 조성해 나갈 것이다.

| 성폭력 근절대책 |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근무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맞춤형 성폭력 예방 교육, 현장 중심의 예방시스템 구축,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성폭력 가해자 처벌 강화 등 다양한 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2017년 9월 군 내 성폭력 근절을 위해 「성폭력 근절대책 강화 방안」을 마련하여 장병들의 의식개혁과 강도 높은 실천을 유도하였으며, 영관급 이상 장교 등을 대상으로 소규모 토의식 교육 실시, 민간 전문가에 의한 성폭력 예방교육 확대, 민간 전문상담관 인력 확충 등을 추진하였다.

2018년 2월에는 사회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미투 운동과 연계하여 외부 민간위원을 위촉하여 「국방부 성범죄 특별대책 TF」를 3개월간 운영하였다. 운영 기간 중 도출된 제도 개선 과제로 장병 선발 과정에서 성인지 평가항목 반영과 성폭력 예방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민간강사 교육내용 검증 강화 등 17개 과제를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군의 문화나 제도 전반을 양성평등한 관점에서 점검하고 피해 발생 시 피해자들이 두려움 없이 신고할 수 있는 분위기와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군 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고 있다. 또한 성범죄자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을 엄격히 적용하여 군 내 성폭력을 완전히 뿌리 뽑도록 할 것이다.

| 여성 편의시설 확충 | 여군 보직제한 규정 폐지와 여군 초임 획득인력이 대폭 증가함에 따라 여성 편의시설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편의시설에 대해 주기적인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연도별, 병과별, 양성기관별 여군인력 획득 규모를 고려하여 생활관 및 훈련장의 편의시설을 최우선적으로 확충하고 있다. 앞으로도 여성 편의시설과 관련한 「국방·군사 시설 기준」을 개선하고 전 부대에 여성 화장실을 설치하는 동시에 인력 확대를 고려한 여성 편의시설 수요를 국방중기계획에 반영하여 근무환경을 지속해서 개선해 나갈 것이다.

11) 자녀의 출산·양육 및 교육 지원 제도(배우자 출산휴가제, 육아휴직제, 직장보육 지원, 자녀 교육지원 프로그램 등), 부양가족 지원제도, 근로자 지원제도, 탄력적 근무제도 등을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공공기관 및 기업에 대하여 심사를 통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

3. 직업군인 주거지원제도 발전

직업군인의 안정적인 주거환경 보장은 군의 사기와 임무 수행 역량 제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이다. 이를 위해 국방부는 「군인복지기본법」에 따라 군 관사와 간부 숙소를 제공하고 전세 등 민간주택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직업군인의 자가 보유율을 높이기 위해 민간주택을 우선·특별 공급하는 등 다양한 주거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2017년에는 주거지원 정책의 종합적·체계적인 발전을 위해 「군 주거정책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국방재원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군인들의 주거복지 수준을 획기적으로 향상할 것이다.

| 맞춤형 주거지원 | 수요자인 직업군인과 군인 가족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주거지원으로 주거 만족도를 향상하고 권역별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을 해소할 계획이다. 지금까지 주거지원 정책은 일률적인 소요 기준에 따라 공급자 위주의 획일적인 방식으로 추진되어 수요자의 주거만족도와 예산투입의 효율성이 저해되어 이를 제고할 필요가 있었다. 앞으로는 수요자의 희망과 지역별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권역별 주거지원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른 맞춤형 주거지원을 제공하여 주거만족도를 제고해 나갈 방침이다.

| 주택 공급방식 다변화 | 민간주택을 활용한 다양한 형태로 공급방식을 전환하여 양질의 주거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지금까지 군 주거시설은 건립·매입·BTL¹²⁾ 등 직접공급에 의한 방식이 주를 이루었지만, 이러한 방식은 막대한 재원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적절한 유지보수가 수반되지 않으면 급속한 노후화로 이어질 수 있다. 앞으로는 전·월세 등 민간주택을 활용한 다양한 형태로 주거시설을 공급하여 수요자의 다양한 주거선택권을 보장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전세지원액을 현실화하고 월세 지원근거를 마련하였으며, 향후에도 전세 대부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 관리운영의 전문성 제고 | 주거시설의 품질관리와 장기 활용을 위해 관리·운영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있다. 군 주거시설이 민간주택에 비해 빠르게 노후화되는 것은 군인·군무원 등 비전문가에 의해 부대별로 직접 관리하는 비효율적인 시설관리 방식에 기인한 바가 크다. 국방부는 주거시설의 품질 유지와 장기 활용을 위해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시설관리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민간위탁을 통

12)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사업방식 중 하나로써, 사업시행자가 자금을 투자하여 사회기반시설을 건설(Build)한 후 준공과 동시에 해당 시설의 소유권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이전(Transfer)하고, 사업시행자에게 일정 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되 그 시설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협약에서 정한 기간 동안 임차(Lease)하여 사용·수익하는 방식의 사업(BTL : Build-Transfer-Lease)

한 권역별 통합관리 방식을 전군에 도입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2018년 1월부터 1군단 지역 주거시설에 대해 시범적으로 위탁관리를 실시하였고, 2023년 전군 확대를 목표로 점진적으로 그 대상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아울러 내실 있는 시설 유지보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동안 불명확했던 국가와 개인의 보수책임 기준을 명확히 설정하고, 민간 주택에 준하는 장기수선계획을 세워 적기 예방보수도 시행할 계획이다.



4. 군 의료시스템 개편

‘장병과 국민 모두에게 신뢰받는 군 의료를 제공한다’는 목표로 「국방개혁 2.0 군 의료시스템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첫째, 환자 중심의 군 의료서비스 개선, 둘째, ‘선택과 집중’을 통한 군 의료의 질 향상, 셋째, 골든타임 내 응급조치 역량 강화 등이다. 국방부는 장병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군 의료서비스 수준을 지속 향상할 것이다.

| 군 의무시설 현대화 | 병사들이 제일 먼저 진료를 받게 되는 사단급 이하의 노후한 의무대와 전방 군단지원병원을 개선하여 장병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사단급 이하 의무대는 2025년까지, 전방 군단지원병원은 2023년까지 신축, 리모델링, 증·개축 중 부대 여건에 가장 적합한 방법을 선택하여 단계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 장병 의료 접근성 및 편의성 강화 | 기존에는 병사들이 민간병원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군 병원 군의관의 소견이 필요하였으나, 1차 의료기관인 사단급 이하 의무대 군의관의 소견만으로도 가능하도록 하여 민간병원 진료가 반드시 필요한 장병이 간편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또한 병사들이 군 병원의 재진료가 필요한 경우 병사 스스로 진료일을 예약하고, 간부의 인솔 없이도 대중교통 등을 이용하여 군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군 병원 진료, 환자 면회 등 병원 방문객들의 출입절차를 완화하고 업무시간 중 병원 출입을 자유화하는 등의 제도 개선을 통해 장병과 그 가족들이 편리하게 병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민간병원과 비교해서도 경쟁력을 갖춘 환자 중심의 병원문화를 정착해 나갈 것이다.

| 직업군인 민간병원 진료비 지원 확대 | 과거 공무 수행으로 질병을 얻거나 부상을 입은 직업군인이

군 병원에서 치료가 가능하나 민간병원을 선택하여 치료하는 경우 치료비 전액(국민건강보험공단부담금+본인부담금)을 개인이 부담해 왔다. 그러나 2018년 3월부터는 「군인연금법」 개정을 통해 국가가 건강보험공단부담금을 부담하도록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직업군인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진료선택권을 보장하고 있다.

| 군 병원 특성화 및 효율화 | 과거 지속적인 군 의료 역량 강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군 의료의 발전속도가 민간의료 수준에 미치지 못하여 장병과 국민의 군 의료에 대한 불신을 완전히 해소하지 못하였고, 장병들의 민간병원 선호현상은 지속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군 병원 기능의 '선택과 집중'을 통해 군 의료의 질을 향상하고, 군이 필요로 하는 외상 분야를 특성화하는 등 군 병원 효율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전방군단을 직접 지원하는 군 병원은 유지하되, 민간병원 이용이 용이한 후방지역 군 병원 16개를 11개로 통·폐합하고, 수술 기능은 권역별 4개 병원으로 단계적으로 통합하는 등 군 의료기관별 기능을 조정하고 특성화할 것이다. 또한 수술기능이 폐지되는 군 병원의 수술 의료인력과 장비 등을 '수술집중병원'으로 집중 배치함으로써 군 병원의 수술역량을 전문화·고도화하고, 기타 군 병원은 환자의 안정·요양 및 재활 기능으로 특성화하거나 지역 내 외래진료와 장병 신체검사 등을 수행하는 '외래검진센터'로 전환할 예정이다.

특히 국군수도병원에 2020년까지 국군외상센터를 설립하여 외상, 총상, 폭발상 등 군 특수질환과 다빈도 질환에 대해 국내 상급병원 수준의 진료능력을 확보하도록 할 것이다.

[도표 6-7] 군 병원별 기능 조정 및 특성화 방향

구 분		현 재	개편 후	비 고
군 병 원	계	16개	11개	
	국군수도병원	1개	1개	2020년 국군외상센터 설치
	전방병원	7개	5개(고양, 양주, 포천, 춘천, 홍천)	
	후방병원	4개	1개(대전)	수술집중병원(4개) : 수도·대전·양주·춘천병원
	특수목적병원	4개	4개(서울지구, 향의원, 해의원, 포항)	
외래검진센터		-	5개	구리, 부산, 강릉, 함평, 대구

| 군 의료인력 확충 및 전문성 강화 | 국방부는 그간 의료 관련 자격이 없는 의무병이 의료행위를 보조해왔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자격을 갖춘 전문 의료지원인력을 충원하고 의료 관련 면허·자격 보유자를 의무병으로 모집·선발하는 '전문 의무병' 제도 등을 시행하고 있다. 또한 군 의료기관 내 숙련된 의사를 확보하기 위해 장기복무 군의관은 행정직위 보다는 전방 임상직위에 우선 활용하여 지속적인

임상경험을 확보해 나갈 것이다. 아울러, 철저한 직무분석을 통해 군 병원의 현역군인 의무인력은 필수 직위만 운영하고 그 외에는 민간 의료인력을 적극 채용하여 민간의 의료역량과 문화를 군 병원에 접목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염출된 군의관, 의무부사관 등 현역군인은 전방 일선 부대 의료취약지로 재배치할 것이다.

| 야전부대 의무인력 보강 | 군 의료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는 환자가 발생한 현장에서 가장 빨리 응급 조치를 통해 환자의 생명을 구하고, 상급 의료기관의 진료가 필요할 경우 ‘골든타임(Golden Time)¹³⁾’ 내에 최적의 의료기관까지 후송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그간 국방부는 군의관이 없고 민간병원 이용이 제한된 격오지 및 독립부대를 대상으로 원격진료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응급구조사 자격을 보유한 의무부사관을 배치하는 등 의료지원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노력하였다. 향후에도 전방지역의 격오지 및 독립부대에 응급 의료인력을 집중 배치함으로써 현장 응급의료지원 역량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이를 위해 GOP 연대에 군의관을 추가 배치하고 상비사단 전투중대급 부대까지 응급구조사를 배치할 계획이다. 또한 응급구조사 교육을 강화하여 전투현장의 응급 의료지원 역량을 향상시킬 것이다.

| 환자 후송능력 제고 | 국방부는 2015년 국군의무사령부의 의료종합상황센터를 확대·개편하고, 응급환자에 대한 헬기 후송을 전담하는 의무후송항공대를 창설하였다. 의료종합상황센터는 응급환자 발생 시 현장에서의 응급처치와 구급차, 후송헬기 등 가용자산을 운용하고 군 병원 및 민간병원에 상황을 공유하여 응급환자의 ‘골든타임’을 확보하는 등 최선의 응급환자 후송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특히 2020년까지 악천후 및 야간 시에도 서북도서 등 장거리 운행이 가능한 의무후송전용헬기 8대를 전력화하여 응급환자 후송능력을 더욱 강화할 것이다. 또한 소방청, 보건복지부 등 관련 부처와 후송헬기를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협력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이다.

| 공공의료 기여 | 국방부는 공공의료 영역에 대한 군의 기여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이다. 과거 우리 군은 사스, 메르스 사태 등 국가 감염병 재난 발생 시 국가의 의무상비군으로서의 역할을 적극 수행하였다. 또한 의료취약지에 위치한 군 의료기관이 지역주민에게 진료를 제공함으로써 의료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하고 있다. 국방부는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등 관련 기관과 공조를 강화하여 국가적 감염병 감시 및 관리, 보건의료 위기대응 등 공공의료에 대한 기여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발전적 민군 의료협력을 추진해 나갈 것이다.

13) 치명적인 외상을 입은 환자들이 수술실로 이송되어 결정적 치료를 받아 생존 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는 시간, 통상 1시간 이내

5. 군 복무 중 자기개발 확대

| 군 복무 중 학점 및 자격증 취득 | 국방부는 군 복무로 인한 장병들의 학업 및 경력 단절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경로로 장병들의 학점과 자격증 취득을 지원하고 있다. 원격강좌는 본인이 다니던 대학의 인터넷 개설 정규강좌를 수강하여 학점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2007년 최초 강원대, 전북대 등 6개 대학으로 시작하여 2018년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등 전국 145개 대학이 참여하고 있다. 또한 복무 중 국가공인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정보처리산업기사, 지게차운전기능사 등 82개 국가기술자격 검정 종목에 대해 매년 두 차례의 정기검정과 지게차와 굴삭기 기능사는 상시검정을 하고 있다.¹⁴⁾ 이를 통해 매년 약 2만여 명의 장병들이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고 있다.

【도표 6-8】 연도별 원격강좌 및 국가기술자격 취득 현황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원격강좌 개설 대학 수(개)	99	110	122	134	141	145
원격강좌 개설 강좌 수(개)	3,225	3,337	3,506	3,871	3,922	4,145
국가기술자격 취득 장병 수(명)	18,291	19,443	20,206	20,653	19,436	19,530

| 장병 자기개발 비용 지원 | 국방부는 장병들이 군 복무 중 자기개발을 위해 개인적으로 지출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꾸준히 확대하고 있다. 2016년 사이버지식정보방 사용료 무료화, 2017년 대학원격강좌 수강신청 수수료 지원¹⁵⁾ 등에 이어 2018년부터는 ‘병 자기개발 비용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의 수혜를 받는 장병은 어학 및 자격시험 응시료, 학습교재비 등에 지출한 비용을 연간 최대 5만 원까지 지원받는다.

14) 국가기술자격 군 내 검정은 산업기사 21개 종목, 기능사 61개 종목에 대해 전·후반기에 각 1회씩 정기검정으로 시행되며, 이 중 수요가 많은 지게차운전 및 굴착기운전기능사 검정은 상시 실시(2018년 38회 시행)

15) 2016년 이전에는 개인이 사이버지식정보방 PC 사용료와 원격강좌 수강신청 수수료를 지불

제3절 장병 인권보호 강화

국방부는 병영 내 악성사고, 인권침해 행위 등의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국민이 신뢰하고 국민과 함께하는 군대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장병의 헌법상 권리와 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인권보호 제도를 개선하고 있다. 또한 장병들의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군 항소심을 민간으로 이양하고 군사법원과 군 검찰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강화하는 등 군 사법제도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1. 장병 인권보호 제도 개선

| 군 의문사 진상규명 및 근원적 해결을 위한 제도 개선 | 군 복무 중 사망자 유가족이 사망 원인에 의문을 제기하는 사고에 대해 국방부는 주도적이고 전향적인 자세로 근원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여 유가족의 의혹 해소와 대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국방부 차원의 대책마련을 위해 2017년 9월부터 군 의문사 조사·제도개선추진단을 구성하여 유가족의 요구사항을 재조사, 수사, 순직심사 등 원스톱(One-Stop)식 지원체계 구축을 추진 중이다. 또한 군 사망사고 초동수사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순직·공상 기준 확대를 위해 「군인사법 시행령」을 개정하였으며, 2018년 9월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의 발족으로 객관적 진상규명 여건을 개선하였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군 복무 중 발생한 사망자에 대해 국가의 책임을 확대하고 예우를 다하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 도입 추진 |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최근 5년간 2,699명이 종교적 신앙 등에 따라 병역을 거부하였으며, 이들 중 대부분이 징역 1년 6개월 이상의 형사 처벌을 받아 왔다.

2018년 6월 28일 헌법재판소는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 제5조 제1항은 헌법상 보장된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여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결정하며, 2019년 12월 31일까지만 잠정적으로 해당 조항의 효력을 인정하였다.

국방부는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 관계 부처 실무추진단, 민간 전문가 자문위원회, 공청회, 여론조사 등을 통해 ‘병역의 의무’와 ‘양심의 자유’가 조화되는 합리적인 대체복무제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국방부는 ‘병역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병역기피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엄격하게 설계하면서도, 안

보태세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국제 규범을 최대한 존중한다'는 원칙하에 시행 방안을 검토하였으며, 2018년 12월 28일 '교정시설에서 36개월 간 합숙근무'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체복무제 도입 방안을 발표하였다.

국방부는 관련 법률안에 대하여 입법예고, 관계 부처 협의,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2019년 초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법률 제·개정이 완료되면 하위법령 제·개정 및 심사위원회 구성 등을 통해 2020년부터 대체복무제를 차질 없이 시행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 군 인권보호관 설치 | 장병의 인권침해 예방과 실질적 피해구제를 위해 군 인권 개선 대책의 일환으로 국가인권위원회 내에 군 인권보호관 신설에 적극 협력하고 군 인권보호관의 활동을 적극 지원할 것이다. 군 인권보호관의 설치 등을 규정하는 「국가인권위원회법」의 조속한 개정을 위해 관계 기관과 협업하여 입법 과정에 적극 참여할 것이다. 또한 장병 인권보호 기능 강화를 위해 부대방문·조사권 등 군 인권보호관의 권한을 보장하고 군 지휘권과 군사보안에 지장이 없도록 군 인권보호관과 상호 협력 체계를 구축할 것이다.

장병 인권보호의 독립성·투명성·신뢰성 보장을 위해 국가인권위원회 내에 군 인권보호관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 군 인권보호관은 부대를 방문하여 조사하고, 군 수사기관 등의 조사와 수사에 입회하여 군 대 내 사건을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할 것이다. 군 인권보호관의 세부적인 추진을 위해 국가인권위원회와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을 협의하고 있다.

| 군 인권교육 강화 | 군 인권교육의 목표는 군인으로 하여금 제복 입은 시민으로서의 권리와 책임을 인식하게 하고, 인권을 존중하는 병영문화를 확산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군 인권교육에 대한 중기계획(5년)을 수립하고, 국방부 및 각 군이 유기적 협력 아래 체계적인 교육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세부적으로 병 복무주기와 부대 실정을 고려한 맞춤형 인권교육, 지휘관의 인권의식 함양을 위한 부대별 외부 인권전문가 초빙 교육, 의료·수사·교정 등 인권 관련 업무종사자 및 인권교관 대상 역량강화 교육, 사이버교육 활성화 및 장병 참여형 군 인권교육 콘텐츠 개발·보급 등을 실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군인으로서의 인격과 명예, 권리가 존중되는 병영문화를 만들 것이다.

| 군 인권보호 제도 개선 | 장병 인권 의식 변화에 따라 법령을 정비하고 외부와의 협력을 활성화하며, 현행 군 인권보호 제도를 내실화하고 있다. 장병 인권침해 방지를 위해 인권 관련 법령과 제도의 인권 영향 평가를 강화하고 인권상담, 진정접수 기능을 체계화하며, 인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국방인권모니터단 운영, 장병 인권실태조사 등을 지속 실



국방인권모니터단 간담회(2018년 6월)

시할 것이다. 또한 인권 현안에 대한 외부전문가 자문기능 강화를 위해 국방부와 각 군 본부에 인권자문 위원회를 신설하고 사단급 부대에 군 인권자문번호시를 지원할 것이다. 앞으로도 사회적 인권상황 변화에 맞추어 장병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제도를 개선할 것이다.

| 병 징계제도 개선 | 군 영창제도가 영장주의 원칙¹⁶⁾에 위배된다는 위헌성의 시비를 해소하고 장병 인권보장을 위해 영창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군기교육, 감봉 등의 징계로 보완하는 「군인사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징계제도가 개정될 경우 군기교육은 군 공동체 특성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준법·인권교육과 대인관계 역량교육 등 인권친화적인 프로그램을 적용할 것이며, 이를 통해 장병의 인권을 신장하면서도 군 기강이 확립될 것으로 기대된다.

[도표 6-9] 현행 징계 종류와 개선안 비교

현행	개선안	비고
강등	강등	현행 유지
영창	군기교육	영창 폐지/신설
	감봉	신설
휴가 제한	휴가 단축	현행 유지(용어 수정)
근신	근신	현행 유지
	견책	신설

2. 군 사법제도 개선

| 독립성과 공정성이 보장되는 군 사법시스템 구축 | 장병들의 공정하게 재판받을 권리와 인권을 보장하고 군사법원과 군 검찰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군 사법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우선 군 항소심을 민간으로 이양하기로 하였다. 1심 군사법원은 국방부 직속으로 5개 지역에 설치하며, 지역 군사법원장은 민간 법조인으로 임명하도록 하였다. 또한 그동안 군사법원의 근간이 되어 온 관

16) 법원 또는 법관이 발부한 적법한 영장에 의하지 않으면 형사절차상의 강제처분(압수, 수색, 체포, 구속)을 할 수 없다는 원칙(헌법 제12조 제3항)

할관 확인제도¹⁷⁾ 및 심판관 제도¹⁸⁾를 폐지하기로 하였다. 군 판사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군 판사에 대한 별도의 군판사인사위원회를 설치하여 진급추천권, 재임용 심사를 실시하고, 군 판사는 법무참모, 군 검사 등 다른 법무직역으로의 순환보직을 금지하기로 하였다. 이러한 군 사법개혁 방안을 담은 「군 사법원법」을 개정하여 군 사법시스템을 개선해 나갈 것이다.

[도표 6-10] 군 사법개혁의 목표와 주요 내용

군 사법개혁을 통한 군 장병의 공정한 재판 및 인권보장			
군사법원 제도 개선		수사제도 개선	
조 직	재 판	군 검찰	군 사법경찰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등군사법원을 민간법원으로 이관 국방부 직속 군사법원 설치 지역 군사법원장 민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확인조치권 폐지 군 판사 순환보직 금지 군 판사 신분보장 심판관 제도 폐지 순회 재판 실시 장병참여재판제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각 군 검찰단 설치 구속영장 청구 승인권 폐지 군 검사의 이의제기권 부여 군 검찰에 대한 구체적 지휘권 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사/작전 헌병 분리 경찰 인권강화 방안 도입 군 사법경찰의 직무권한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병사의 군 사법경찰 임명 금지 군 범죄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 도입

투명하고 합리적인 수사제도 마련 | 군 검찰의 독립성 강화를 위해서 현재 사단급 이상에 설치된 보통검찰부를 폐지하고 각 군 본부 소속으로 검찰단을 창설하기로 하였고, 지휘관의 구속영장 청구승인권¹⁹⁾도 폐지하기로 하였다. 군 사법경찰관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 수사와 작전 군사경찰로 조직·기능 분리, 군사경찰의 행정경찰활동에 대한 법률적 근거 마련, 군사경찰 병사의 사법경찰관리²⁰⁾ 임명 금

- 17) 관할관은 군사법원이 설치된 부대의 장인 지휘관으로(군사법원법 제7조), 관할관은 군사법원 판결을 확인조치하고, 피고인이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범죄에 한정하여 선고된 형의 3분의 1 미만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는 권한인 관할관 확인조치권을 보유(군사법원법 제379조)
- 18) 군사재판의 특유한 제도로서 법관의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일반 장교를 심판관으로 임명하여 군 판사와 함께 재판관으로서 형사재판에 참가하는 제도
- 19) 군사법원법 제238조(구속)에 따라, 군 검사는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 해당 군 검찰부가 설치된 부대의 장의 승인이 필요
- 20) 군 사법경찰관리는 군사법원법에 근거한 군 수사기관으로 군사법원의 재판권이 있는 범죄에 대해 수사하며, 군 사법경찰관리에는 군 사법경찰관과 군 사법경찰리가 있음. 군 사법경찰관은 관할이 있는 범죄를 수사하는 수사기관이고(군사법원법 제43조, 제44조), 군 사법경찰리는 군 검찰 또는 군 사법경찰관의 명령에 따라 수사를 보조하는 수사보조기관(군사법원법 제46조). 현재 군 사법경찰리는 군사경찰인 병, 군사안보지원사령부에 소속되어 보안업무에 종사하는 병 등이 있음

지 등을 추진할 것이다.

| 수사절차에서 인권보장 강화 시행 | 2018년 7월부터 군 수사절차에 인권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시행하였다. 종전에는 피의자 조서를 작성하지 않은 면담에 변호인 참여를 보장하지 않았으나, 변호인 참여를 보장하여 피의자의 방어권을 강화하였으며, 체포·구속·압수·수색 과정에서 피의자의 지인들의 정신적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였다. 종전에는 피의자의 휴식권 기준이 명확하지 않았으나, 조사 시작 후 2시간마다 10분 이상의 휴식을 부여하도록 기준을 구체화하였다. 아울러 군 범죄 피해자가 법률적 조언을 받을 수 있도록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여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하였다.

제4절 국방 문민화 및 청렴한 국방운영

국방부는 국민이 선출한 대표가 군을 민주적으로 관리·운영한다는 문민통제의 기반을 구축하고 군이 본연의 전투임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국방부 문민화 및 정치적 중립 보장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정책과정에 국민의 참여 확대, 민·군이 함께하는 반부패 청렴 대책 마련, 정책홍보 활성화를 추진하여 국방운영을 개방화하고 있다.

1. 국방부 문민화 적극 추진

| 국방부 문민화²¹⁾ 실질적 추진 | 국방부는 국방정책에 대한 문민통제의 원칙을 확립하고, 군이 본연의 전투임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방부 문민화를 추진하고 있다. 군에 대한 문민통제는 헌법과 법률에 명확히 규정된 민주국가의 기본원칙이며, 국방 역시 경제·사회·문화 등 다른 분야와 마찬가지로 정부 정책의 큰 틀에서 민주적 통제를 받아야 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2017년 출범한 현 정부는 문민통제 원칙 확립과 군의 정치적 중립 보장을 전제로 국방부와 각 군 간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국민이 신뢰하는 선진 민주국군’으로 거듭날 것을 강조하고 있다. ‘국방개혁 2.0」의 핵심은 문민통제의 확립과 3군 균형발전이라는 인식하에 실질적인 국방부 문민화를 적극 추진해 왔다.

이에 따라 국방부본부 실장급 직위를 예비역이 아닌 민간공무원으로 대체하고 최초로 민간 출신 여성 대변인을 임명하는 한편 현역장성이 보임해 온 전력정책관을 민간공무원으로 보임하는 등 실질적인 문민화 성과를 창출하고 있다.

향후에도 군인이 보임되어 있는 국방부본부의 국·과장급 직위 중 문민화 필요 직위를 추가 식별하여 대체할 것이다. 이는 단순히 민간인의 활용 비율을 높이는 것만이 아니라 국방·군사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민간인력을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군사전문성이 요구되는 군인 필수직위는 최적화하려는 것이다. 또한 국방 교육·연구기관의 주요 직위 문민화를 위해 2017년 한국국방연구원장에 민간출신을 보임한

21) 국민으로부터 선출된 대통령 및 행정부 각료인 국방부장관과 민간전문가 집단이 국방에 관한 주요 정책을 결정하고 국가의 정치·외교적인 정책적 결함에 입각하여 군사력 사용을 보장하는 체계

데 이어서, 국방대학교 총장도 현역 장성에서 문민으로 전환할 것이다. 특히 주요 선진국에서는 순수 민간출신이 국방장관에 임명되는 점을 감안하여 우리나라에서도 민간출신이 국방부장관에 임명될 경우에 대비하여 원활한 임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장관의 군사 보좌기능 등을 강화할 것이다.

| 국방부분부 공무원 군사 전문성 강화 | 국방부는 국방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중립적이고 균형적인 시각에서 국방부장관을 보좌할 수 있도록 국방부분부의 인적 구성을 문민 중심으로 편성하는 한편 전문성을 갖춘 민간 관료와 직업군인을 상호 조화롭게 발전시켜 나가고자 한다. 따라서 국방부분부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각 군의 입장을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군사전문성 역량을 갖추어야 한다.

국방부 공무원에 필요한 역량은 군사전문성 및 정책 분야별 전문성이며, 실효성 있는 교육, 분야별 보직 관리 및 현장 중심의 업무 정착으로 전문성 강화를 도모하고자 한다.

향후 지속적으로 공무원의 군사전문성 및 정책전문성 역량이 조기에 확보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것이다.

2. 군의 정치적 중립 보장

| 정치적 중립 보장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 | 군의 임무는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보위하는 것으로, 국방부는 군 본연의 임무 수행을 보장하기 위해 정치적 중립 준수 및 보장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현재 군의 정치적 중립 의무는 헌법 및 법률에 기반하고 있으나, 정치 개입을 지시한 경우 처벌할 수 있는 대상을 군인에 한정하고 명시적인 거부 의무가 없는 등 제도적인 미비점이 있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국방부는 정치적 개입을 지시한 군인 이외에 외부공직자 등에 대한 처벌 조항을 포함하고, 정치 관여 지시에 대한 거부 의무와 신고자에 대한 포상제도 내용을 법제화할 계획이다. 또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과 「군형법」, 「부대관리훈령」상 군의 정치적 중립 「행동수칙」과 「세부 행동기준」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을 보완할 것이다.

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전투력의 근간이며, 국민의 신뢰는 군이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때 비로소 보장된다. 군의 정치적 중립의 보장을 통해 군은 국토방위 및 국민안전 보장이라는 진정한 군인 임무 수행에 전념할 수 있을 것이며 이는 ‘싸우면 이기는 강군’을 육성하는 초석이 될 것이다.

| 제복 입은 민주시민 양성 | 국방부는 법치주의, 정치적 중립성 등 자유민주주의의 가치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여 민주 시민으로서의 기본 소양을 함양하고, 상호 존중하고 협력하는 ‘가고 싶고 보내고 싶은 인성 친화적 군 문화’를 조성할 것이다. 이를 위해 장병들에게 인문학, 역사, 인성교육을 강화하고, 문화에

술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할 것이다. 이를 통해 장병들이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인식하며 스스로 실천하여 애국심과 군인으로서의 자긍심을 갖고 군 본연의 조국 수호 임무에 전념하도록 할 계획이다.

3. 개방형 국방운영

| 정책과정에 대한 국민 참여 강화 | 국방부는 ‘참여와 신뢰를 통한 공공성 회복’을 목표로 국방혁신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혁신 전략인 ‘참여와 협력’에 맞게 국방정책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주요 정책과정에 국민 참여 및 의견수렴 기회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

국방부는 2017년 12월부터 시민단체와 함께 국방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소통하기 위하여 ‘국방NGO 포럼’²²⁾을 실시해 오고 있다. 또한 국민생활에 영향을 미치고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며, 국민의 관심도가 높은 사업 등에 대해서는 사전에 정보를 공개하고 정책실명 공개과제도 확대하였다. 이를 통해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국민친화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외에도 ‘국방인권모니터단’, ‘국방정보공개 국민참여단’, ‘국민디자인단’²³⁾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2018년부터는 ‘어머니 장병급식 모니터링단’의 역할을 피복 분야까지 확대함으로써 국민이 정책 집행 실태를 직접 모니터링하고 평가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하였다.

2018년 1월에는 「국방개혁 2.0」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제고하고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국방개혁 2.0」 국민제안 공모전을 개최하였다. 공모전은 장병 복지 및 인권 등 국민적 관심이 높은 주제를 대상으로 약 40여 일간 진행되었으며, 대학생, 시민, 장병 등이 두루 참여하여 총 613건의 아이디어가 발굴되었다.

또한 국방예산 편성과정에 국민의 실질적 참여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 2018년 5월 ‘국민참여 국방예산 대토론회’를 개최하였다. 토론회에서는 국민, 장병이 함께 모여 사전에 온라인을 통해 접수된 국민 제안 사업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토론회에서 논의된 국민 제안 사업 중 국민의 관심이 높았던 대표적인 사업들은 2019년 국방예산에 반영되었다.

앞으로도 국방부는 국민이 정책결정과 집행과정 전반에 직접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뒷받침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22) 국방 현안에 대하여 민·군 간 양방향 정보공유·토론을 통해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 안보 공감대를 확산시키기 위해 국방부와 NGO 단체가 함께하는 포럼

23) 정책과정 전반에 정책 공급자인 공무원과 수요자인 국민, 서비스디자이너 등이 함께 참여하여 서비스 디자인 방법을 통해 공공서비스를 개발, 개선해 나가는 정책 워킹그룹



2018 국방예산 대토론회

| 민·군이 함께하는 반부패 청렴 대책 마련 | 국방부는 청렴국방 실현을 위해 국방정책 및 운영에 대한 국민의 감시와 참여를 확대하고, 민·군이 협력하는 부패방지체계를 구축하는 등 반부패 청렴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민간전문가에 의해 군의 부패행위를 감사하고 개선권고 기능을 갖는 ‘청렴옵부즈만’ 제도 도입, 군의 반부패 대책에 대한 자문역할을 위해 시민사회와 함께하는 ‘청렴국방 민관협의회’ 운영,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반부패 시민단체와 청렴협약 체결, 일반 시민이 참여하는 ‘청렴정책 모니터단’ 운영 등 민간이 참여하는 부패방지체계를 구축할 것이다. 또한 반부패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방부 청렴정책 추진방향에 대한 진단 용역을 실시하여 중장기 종합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다.

또한 ‘청렴’이 공직자의 핵심가치임을 인식하게 하고 모든 직무 수행의 근간으로 삼도록 전군 차원의 청렴교육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 국방부는 내부 신고자가 신고를 이유로 인사상 또는 경제적으로 불이익 조치를 받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모든 간부를 대상으로 내부 신고자 보호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내부 신고자 색출, 신상정보 유출, 신고자 불이익 조치 등 내부 신고자 보호를 위반하는 자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히 조치하고, 국방 발전에 기여한 내부 신고자에게는 적극 보상할 계획이다.

| 정책 홍보 활성화 | 국방부는 정책참여와 변화를 열망하는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언론매체, 온라인 및 현장 소통 등 다양한 수단을 활용하여 「국방개혁 2.0」을 비롯한 주요 정책을 적극 홍보하고 있다.

그 어느 때보다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는 온라인 및 모바일 기반의 홍보콘텐츠를 제작하여 정책수요자인 국민과 실시간으로 양방향 소통을 추진하고 있다. 「2018~2022 군인복지 기본계획」, 군 의료체계 개편, 군 사법개혁 등 「국방개혁 2.0」 추진과제와 제7회 서울안보대화(SDD), 제70주년 국군의 날, 2018 국제관함식 등 주요 행사를 다양한 온라인 콘텐츠로 제작하여 페이스북, 블로그 등의 국방부 온라인 채널을 통해 지속적으로 홍보하였다.

온라인 미디어의 강세 속에서도 여전히 과급력이 높은 방송 매체를 통한 홍보²⁴⁾도 지속 추진하여 병영생활 개선과 국군의 대외활동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특히 ‘평창, 우리 군이 책임진다’ 등의 2018 평창 동계올림픽 특집방송을 통해 올림픽을 적극적으로 지원한 우리 군의 활약상을 전파하였다.

군인들에게 자긍심을 심어주기 위해 진행하고 있는 ‘장병사랑 캠페인’을 다양한 방법으로 기획하여 진

24) 2017년 7월 ‘혹서기 장병 의식주 개선’편(KBS), 2017년 12월 ‘전문의무병제도 및 군 의료서비스’편(KBS), 2018년 4월 ‘한빛부대 창설 5주년 특집 다큐멘터리’(SBS) 등



고마워요 우리국군 경례 이벤트(2017년 11월)

행하고 있다. 2017년에는 인기 연예인과 장병이 함께 참여한 ‘캠페인송’을 제작하였고, 국민을 대상으로 ‘따라 부르기 공모전’도 실시하였다. 국군의 날을 맞이하여 국민이 장병들에게 고마움을 표현하는 오프라인 ‘경례 이벤트’를 실시하였으며, 온라인 영상은 소셜네트워크(SNS)에서 80만 회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하는 등 국민에게 큰 호응을 얻을 수 있었다. 2017년 최초로 추진한 ‘국군화보 프로젝트’는 우리 군의 직책별 전문성을 주제로 제작되었으며, 페이스북 등에 총 260만 회 이상 조회되고 달력으로도 제작되어 군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이끌어냈다.

또한 2018년에는 국민 및 장병들과의 소통 활성화, 장병 사기진작을 위해 국민의 비무장지대(DMZ) 현장 견학 및 부대 병영식당 체험행사, 울릉도에 근무하는 장병 응원행사 등 다양한 이벤트를 추진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국방부가 2017년 제10회 대한민국 인터넷소통대상에서 ‘공공부문 종합대상’, 2017년 12월 제14회 웹어워드 코리아 ‘정부 기관 분야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대외적으로 온라인 홍보 우수기관으로 선정되기도 하였다.

국방부는 정책에 국민의 목소리를 담고 소통하기 위해 언론·홍보·사회 등 전문가로 구성된 ‘국민소통전문가단’²⁵⁾과 대학생으로 구성된 ‘온라인 서포터즈(M-프렌즈)’²⁶⁾를 운영하는 등 국민 참여형 홍보를 추진할 것이다.

25) 2015년부터 국방정책 홍보 아이디어 발굴과 전문가들의 재능 활용을 위해 운영(2017년 19명 → 2018년 22명)

26) 주요 정책에 대해 국민 소통 중심의 온라인 홍보 강화를 위해 2016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젊은 층 위주의 온라인 기자단(2017년 30명 → 2018년 52명)

제5절 **공정한 병역의무 이행 및 국민 편익 증진**

국방부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병역의무 이행 환경을 조성하고 병역 이행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병역제도를 발전시키고 있다. 또한 국민의 불편을 제거하고 국민의 편익을 증진시키기 위해 작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군 공항 이전,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군사시설 조성 및 규제개혁을 추진하고 있으며, 환경친화적인 군으로 거듭나고 있다.

1. 공정한 병역의무 이행 및 병무행정 개선

| 병역자원의 안정적 총원 | 전환·대체복무²⁷⁾는 병역자원의 총원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수준에서 군 복무를 대신하여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 왔으나 2020년대 초반 이후 저출산으로 인해 병역자원이 급감함에 따라 전환·대체복무 인원을 단계적으로 폐지·감축해야 한다. 국방부는 국방태세 유지, 병역의무 이행의 공정성, 우수인재의 효율적 활용 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계 부처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최선의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 사회적 관심계층 병적 별도관리 제도 | 우리나라에서 병역은 대체 불가능한 신성한 의무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위공직자나 유명 연예인들의 불성실한 병역이행 사례는 국민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주어 병역의 가치를 훼손하는 주요 병폐로 인식되어 왔다.

이에 따라 「병역법」을 개정하여 2016년 6월부터 1급 이상 고위공직자와 자녀의 병역 이행사항을 별도로 관리해 왔으며, 2017년 9월 22일부터는 병적 별도관리 대상을 4급 이상 공직자와 자녀, 체육선수, 연예인, 고소득자와 자녀까지로 대폭 확대하였다. 이들 사회적 관심계층에 대하여는 병무청에서 병역 복무를 완료할 때까지 병역 이행사항을 따로 분류하여 관리하고 있다.

사회적 관심계층 병적 별도관리 제도를 통해 대상자들의 병역이행 과정을 투명하게 관리하여 부당한

27) 전환복무는 현역병 임명대상자가 의무경찰, 의무해양경찰 또는 의무소방원으로 신분을 전환하여 복무하게 하는 제도이며, 대체복무는 공중보건기사 등과 같이 공공목적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산업기능요원 등과 같이 병무청에서 지정한 기업 등에서 민간인 신분으로 일정 기간 근무하여 군 복무를 대신하는 제도

병역회피·면탈 행위를 예방함은 물론, 투명하고 공정한 병역문화를 확립해 나갈 것이다.

| 인사청문 시 병역사항 사전 공개 | 1999년 병역공개 제도가 도입된 이후 국회의 임명동의안이나 선출안이 제출되는 공직후보자²⁸⁾만을 대상으로 국회에 병역사항을 신고하도록 하고 이를 공개해 왔다. 그러나 국무위원과 같은 공직후보자에 대한 사전검증과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2018년 5월 29일부터 국무위원 후보자도 국회에 인사청문요청안이 제출되면 병역사항을 국회에 신고하고 공개하도록 하였다. 이를 통해 자발적으로 병역을 이행하는 병역문화를 정착하고 확산시키는 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병역판정검사 개선 | 병역처분의 공정성을 제고하고 우수자원을 획득할 수 있도록 병역판정검사를 개선하고 있다. 정밀한 병역판정검사를 위해 최신 의료장비와 전문의료인력을 보강하고 있으며, 심리검사의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해 임상심리사를 증원하고 종합심리검사 제도를 도입하는 등 병역판정검사를 지속해서 개선해 나갈 것이다. 더불어 수검자의 편익 증진을 위해 병역판정검사 결과에 따라 개인별 질병·치료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잠복결핵검사를 실시하여 결핵 발생을 예방하고 입영 후 군부대 내 결핵 전염을 차단하고 있다.

2. 군 공항 이전사업 추진

국방부는 군 공항 인근의 소음피해와 도시발전 제한 등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2013년에 제정된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군 공항 소재 지방자치단체장이 이전을 요구한 대구·수원·광주 군 공항 이전을 추진하고 있다.

대구 군 공항은 2018년 3월 경상북도 군위군 우보면 일대와 의성군 비안면·군위군 소보면 일대 등 2개 지역을 이전후보지로 선정한 이후 이전부지 선정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수원 군 공항은 2017년 2월 경기도 화성시 화옹지구를 예비이전후보지로 선정하였으며, 화성 지역 내 군 공항 이전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한 후에 이전후보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광주 군 공항은 군 공항 입지 적정지역에 대한 군사작전 적합성을 검토한 후 예비이전후보지 선정을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다. 향후 지방자치단체, 주민과의 소통을 통해 예비이전후보지로 선정할 계획이다.

28) 임명동의안을 제출하는 공직후보자 : 국무총리, 감사원장, 헌법재판소장, 대법원장, 대법관 후보자
선출안을 제출하는 공직후보자 : 헌법재판소 재판관(3명),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3명) 후보자

앞으로도 원활한 군 공항 이전사업 추진을 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과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갈 것이다. 이전사업으로 야기되는 주민과의 갈등을 해소하고 공정하고 투명하게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민·관·군 협의체, 주민소통간담회 등을 통해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것이다.

3.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군사시설 조성

| 해·강안 경계철책 철거 | 해·강안 지역 경계작전을 위해 설치한 철책은 작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군 주도로 철거할 예정이다. 해·강안에 설치된 경계철책은 관광자원 개발의 저해 요소로 작용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속적으로 철거를 요구해 왔다. 지금까지는 지자체의 철거 요청 시 군의 작전성 검토를 통해 승인된 구간에 한하여 지자체 예산(또는 국비 50% 지원)으로 경계철책을 철거하거나 감시장비로 대체하였다. 그러나 국방부는 「국방개혁 2.0」의 일환으로 작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군 주도로 경계철책을 철거하거나 감시장비로 대체하기로 하였다. 2018년 실시한 해·강안 철책 작전성 검토결과는 [도표 6-11]과 같다.

즉시 철거가 가능한 구간은 2018년 하반기부터 철거를 진행하고 있으며, 감시장비 보강 후 철거구간은 외부 설계용역을 통해 예산을 구체적으로 판단하여 2019년부터 철거를 진행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국민의 편익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군 작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해·강안 경계철책 철거 또는 대체를 2020년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도표 6-11] 해·강안 철책 작전성 검토 결과

단위 : km

구 분	대 상	기존 철거 승인구간			작전성 검토 결과			
		계	완 료	진 행	계	존 치	감시장비 보강 후 철거	즉시 철거
계	413.3	114.62	69.3	45.32	298.68	129.08	34.67	134.93
1야전군	183.55	92.02	64.7	27.32	91.53	52.36	0.31	38.86
2작전사	51.23	-	-	-	51.23	26.88	10.12	14.23
3야전군	178.52	22.6	4.6	18	155.92	49.84	24.24	81.84

| 유희·방치시설의 체계적 철거 | 국방부는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지역주민과 상생하는 군사시설 조성을 위해 전국에 사용·관리하지 않고 방치된 군 유희시설에 대한 철거 및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군에서도 지속적으로 유희·방치 군사시설을 정리하여 왔으나, 과학화 감시 장비의 발달과 군 병력 감

소로 인해 사용빈도가 줄어들거나 부대 해체·축소 이후 활용계획이 없어진 기존 시설물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군 유휴시설물 방치로 인해 미관상의 문제뿐만 아니라 붕괴 위험 및 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 지역개발 제한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국방부는 유휴·방치시설의 체계적 철거를 위해 2018년 현장 확인과 작전성 검토 등을 병행하여 영·내외 유휴시설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였다. 전수조사 결과를 토대로 유휴시설 철거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지자체 개발계획에 저촉되거나 장기간 방치에 따른 경관 훼손 및 우범지대화 우려가 있는 유휴 군사시설들을 2021년까지 철거해 나갈 예정이다.

| 무단점유 사·공유지 정리 | 과거 군이 전시, 긴급 작전수행 등에 따라 불가피하게 점유한 사·공유지로 인해 일부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적법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국방부는 이러한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국민의 재산권 보장 및 군 신뢰도 제고를 위해 군이 적법한 보상 없이 사용하고 있는 사·공유지를 지속적으로 적법화해 나가고 있다.

2017년 말 기준으로 군이 사용하고 있는 사·공유지 5,540만^m² 중 무단점유 사·공유지는 2,572만^m²이다. 국방부는 군이 계속 사용할 필요가 있는 토지는 매입하고 한시적으로 사용하는 토지는 임차하고 있으며, 부대 이전·재배치 등으로 사용하지 않는 토지는 시설물 철거 및 토양오염 정화 등의 원상회복 절차를 거쳐 반환하고 있다.

한편 국방부는 2018년 2월부터 11월까지 무단점유 사·공유지에 대한 측량 사업을 실시하였다. 측량 결과를 반영하여 소유자에게 무단점유 사실을 통보하고 적법절차에 따라 보상 및 정리 작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매입, 임차, 교환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무단점유 사·공유지가 조기에 정리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다.

| 군사시설 주변 지역 지원법안 마련 | 군 작전 및 훈련 시 발생하는 소음 등으로 인한 주민 생활 불편이 발생하고 있으나, 현재는 법원 판결에 따른 손해배상만 있을 뿐 관련 지원 및 보상 제도가 미비한 상태이다. 이에 국방부는 군 비행장, 사격장 등 군사시설 주변 지역 주민들이 겪고 있는 생활권 침해 등을 완화하고, 주민복지 향상, 환경 개선 등을 지원하기 위해 해당 지역에 소음대책 사업과 주민지원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국방부는 대내외 의견을 종합하여 지원대상이 되는 군사시설 적용 범위 확대²⁹⁾, 주민 지원 사업 실시 근거 등이 포함된 「군사시설 주변지역 지원법(가칭)」 제정을 추진 중이다. 국방부는 2019년에 재정당

29) 18·19대 국회 제출 정부안의 적용 대상 군사시설은 군용비행장, 사격장이었으나 이번에는 일반 군사시설까지 적용 범위를 확대할 예정

국과의 협의를 거쳐 군사시설 주변지역 지원 관련 법률안을 마련하고, 빠른 시일 내에 국회를 통과하여 법률이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다.

| 민군 공동 사용 활성화 | 국방부는 군 보유시설을 주민친화공간으로 활용함으로써 주민복지에 기여하고자 시설 개방을 지속 확대하고 있다.

현재 군은 40여 개소의 체육·문화시설을 주민에 개방 중이나, 지역사회의 공공 체육·복지시설 부족으로 군 시설에 대한 주민들의 추가 개방 요구가 지속되고 있다. 보다 적극적인 군 시설의 개방을 위해 개방 관련 근거와 세부적인 운영방법 등을 마련 중이다.

[도표 6-12] 주요 개방 사례 : 공군사관학교

구 분	주요 내용
주민편의 제공	• 생활체육시설(축구장, 야구장, 국궁장) 주민에게 상시 개방
지자체 대규모 행사 지원	• 전국체전, 소년체전, 세계 소방관경기대회, 패러글라이딩대회 등 대규모 지자체 행사 장소 지원
민간행사 지원	• 체육대회, 단합행사 등의 행사에 학교시설(종합경기장, 실내체육관, 하늘공원) 제공 • 콘서트 등 문화행사 시 대형강당(안중근홀) 대관

2018년 4월부터 군이 보유 중인 체육시설·주차장·회의실 등의 공공자원 현황을 전수조사하고 있다. 전수조사 결과 개방 소요가 많은 시설을 시범 개방한 후 모범사례를 선정하는 등 지역사회와 주민복지에 적극 기여할 계획이다.

4. 국방 규제 개혁

| 국방 분야 규제 개선 | 국방부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인 ‘민생과 혁신을 위한 규제 재설계’ 추진에 맞춰 국가안보와 국민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국민의 편익을 보장하도록 미래 신산업, 군사시설, 방위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규제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2017년에는 건설 분야의 신기술·우수제품을 군 시설의 설계에 반영하기 위한 선정 절차를 간소화³⁰⁾하고 신기술·우수제품 업체 설명회를 개최하여 업체의 판로 개척을 지원하였다. 또한 군복과 군용장

30) 당해 연도 군 시설 사업에 적용할 신기술·우수 제품을 일괄 선정함으로써 기존에 개별 사업별로 적용기술을 선정함에 따른 업체의 입찰공고 부담 등을 경감

구의 제조·판매 허가신청이 처리기간인 40일 내에 처리되지 않은 경우 허가된 것으로 간주하도록 제도를 개선하였다.

2018년에는 문재인 정부 규제혁신 추진 방향의 핵심인 미래 신산업·신기술 분야의 지원을 위해 미래 도전 기술 개발 제도 도입을 추진³¹⁾하여 무기체계 개발에 무인·로봇·인공지능 등의 신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또한 주요 방산물자 수출허가 사전절차를 간소화³²⁾하는 법안을 마련하여 소요기간을 단축하는 등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였다. 이외에도 범정부 차원의 규제 개선 추진³³⁾을 적극 지원하여 군 관할공역에서 농업용 드론 비행허가, 사업용 드론의 시험비행 공역 확대 등 국민 불편을 지속적으로 해소해 나가고 있다.

규제 개선과제 추진 외에도 국방 분야에 불필요한 규제가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하여, 법령에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할 때는 규제의 적절성을 국방부 규제개혁심사위원회에서 판단하고 있다.

앞으로도 지자체 및 기업 현장의 수요조사, 규제개혁신문고 등을 통해 국민 불편사항을 적극 발굴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대안을 마련함으로써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 개선을 추진해 나갈 것이다.

| 군사시설 보호구역 규제 합리화 | 군사시설 주변 지역의 급격한 도시화로 인해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등 규제 완화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국방부는 군사작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국민의 재산권 행사를 보장하고 주민 편익을 증진하기 위해 보호구역의 해제·완화를 적극 추진해 오고 있다.

[도표 6-13]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완화 현황(비행안전구역 해제 현황 포함)

단위 : km²

구분	계	2009년 이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해제	778.59	225.71	25.22	49.54	1.59	27.79	26.72	20.36	26.12	37.13	338.41
완화	320.47	240.66	2.67	5.70	6.25	0.76	46.53	4.51	0.22	0	13.17
합계	1,099.06	466.37	27.89	55.24	7.84	28.55	73.25	24.87	26.34	37.13	351.58

아울러 국방부는 지방자치단체에 군사시설 보호구역 협의업무에 대한 권한을 위임하고 있으며, 국민

31) 현행법상 국방기술개발은 소요에 의한 개발에 한정되어 신기술을 적용한 무기체계 개발이 어려우므로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무인, 로봇, 인공지능 등)을 적용하여 소요에 기반을 두지 않고 미래전에 대비한 무기체계를 개발할 수 있도록 (가칭)국방과학기술 혁신촉진법 제정 추진

32) 주요 방산물자 수출허가 전 '수출 예비승인'과 '국제입찰 참가승인'을 '수출 예비승인'으로 통합

33) 국무조정실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 등에서 발굴한 국방 분야 규제

의 행정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협의위탁³⁴⁾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2018년에는 25.29km²를 추가로 위탁하였다.

[도표 6-14] 협의위탁 지역 현황

단위 : km²

합 계	2009년 이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1,543.64	643.33	230.06	55.24	40.56	93.49	46.65	344.17	57.2	7.65	25.29

또한 국방부는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완화와 병행하여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제도를 개선하고 있다. 2018년에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건축물 용도 변경 시 군 협의 대상을 축소하고, 폭발물 보호구역에서의 건축행위를 완화³⁵⁾하는 등 국민의 불편을 줄이고, 권익을 침해할 여지를 개선할 예정이다.

앞으로도 국방부는 접경지역 지자체와 민군상생 협의체를 구성하여 주민 및 지자체 불편사항 등 접경 지역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할 것이다. 향후 작전환경이 변화³⁶⁾되면 국방부는 이에 맞춰 군 작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합리적으로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해제·완화하고 제도를 개선하는 등 국민 재산권 행사에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를 지속적으로 완화할 계획이다.

| 탄약 안전거리 조정 | 국방부는 탄약 저장시설 주변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최소한의 안전거리를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군사시설 보호구역 설정으로 건물 신축 및 증축 제한, 공공도로 건설 제한 등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와 지역 개발에 제한을 주고 있다.

국방부는 탄약시설 주변 주민들의 제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현재 전체 탄약고의 31%를 차지한 노후화된 지상형 탄약고를 이글루형 탄약고로 현대화하면서,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와 지역 개발에 제한을 주고 있는 안전거리를 지속적으로 축소 조정하였다. 특히 2017년에 경기도 포천시와 기부대 양여사업으로 지하(터널)형 탄약고를 군 최초로 신축하여 송우리 일대 18만m²를 포함, 해당 탄약부대의 안전거리를 기존의 452만m²에서 133만m²로 70% 이상 감소시켰다. 이로 인해 구리~포천 간 고속도로와 송우~양주 지선의 개통을 보장함은 물론 해당 지역의 발전 및 주민의 재산권 행사에도 크게 기여하였다.

국방부는 지하(터널)형 탄약고가 국토를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하면서도 탄약 저장 지원능력을 향상

34) 도시 지역 안의 보호구역, 농공단지 등 작전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하면서 지역사회 발전 및 주민편익을 도모할 수 있는 지역에 대해 관할부대와 협의 없이 지자체가 허가행위 가능

35) 시행령 제13조 제3항 제8호 개정, 시행규칙 제8조 제1항 개정 및 제7조 제2항 삭제

36) 미래병력 감소, 무기체계 변화, 부대구조 개편 등

시킬 수 있음을 인식하고 2018년 정책검토를 시작하였으며, 지질상 지하형 탄약고 신축 가능성 등 제반 사항을 고려해서 지하(터널)형 탄약고 신축을 중장기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국민의 안전과 재산권 행사를 보장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5. 환경친화적인 군 운영

| 군 환경오염 방지시설 확충 및 개선 | 국방부는 군에서 배출된 오·폐수³⁷⁾로 인해 수질이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2017년 12월 기준으로 오수처리시설 2,973개소와 폐수처리시설 1,344개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토양환경의 보전을 위해 4,107개의 특정 토양오염대상시설³⁸⁾에 대해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른 토양오염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오염정화사업 등 토양환경 복원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유류 누출 사고 등으로 인한 토양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식별된 드럼야적장, 방유조³⁹⁾ 등 토양오염 방지 시설 소요 17,595개 중 2017년까지 14,245개소를 설치하였고, 2018년에는 294개소, 그 이후에는 연차적으로 추진하여 총 3,056개소를 설치할 계획이다.

| 친환경적인 국방시설사업 추진 | 국방부는 장병들이 석면·라돈 등 유해물질에 노출되지 않도록 석면 함유 건축물 정비, 라돈 저감사업, 유해환경작업장 개선 등의 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17년 10월부터 2018년 1월까지 육안으로 조사한 결과⁴⁰⁾ 석면 함유 건축물 총 23,975동을 확인했다. 이 중 부대 이전, 유희시설 철거공사 등 타사업 대상인 7,794동을 제외한 16,181동을 대상으로 2018년에 262동에 대한 석면 함유 자재를 제거하였다. 2019년부터는 2배 이상 증액된 500억 원 이상을 지속 투입하여 석면 함유 자재의 제거 소요 기간을 단축할 계획이다.

라돈 저감사업 추진을 위해 2012년부터 2015년까지 병영생활관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실태조사 결과 기준을 초과한 408동 중 225동에 대해서 토양배기법·실내환기법⁴¹⁾ 등을 적용하여 저감사업을 완료했다. 2018년에는 38동을 대상으로 저감사업을 추진하고 잔여시설 145동에 대해서는 2019년까지 저

37) 오수(하수) : 사람의 생활이나 경제활동으로 인하여 액체성 또는 고체성 물질이 섞여 오염된 물(「하수도법」 제2조)
폐수 : 물에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수질오염 물질이 섞여 있어 그대로 사용할 수 없는 물(「물환경보전법」 제2조)

38) 토양을 현저하게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토양오염 관리시설(「토양환경보전법」 제2조)로 20,000ℓ 이상 유류저장시설이 포함됨

39) 지상 유류탱크의 기름유출을 차단하는 욱조 형태의 구조물

40) 육군·해군·해병대는 환경담당관이, 공군은 고용노동청에 등록된 자체 석면조사팀에서 조사 시행

41) 토양배기법 : 건물 하부의 토양 공기를 외부로 배출하는 공법(토양의 압력이 낮게 되어 실내로의 라돈 유입 방지)
실내환기법 : 환기장치를 설치하여 실내 공기를 외부로 배출시키고, 실외 공기를 내부로 유입시키는 공법

감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유해환경작업장 환경 개선을 위해 탄약창 등의 도금·정비를 수행하는 2,500여 개 시설물을 대상으로 연 1회 작업환경 측정 및 5년 주기 작업환경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기준치 초과 시설을 확인하고 있다. 기준치를 초과한 시설에 대해서는 국소배기장치, 환기설비 및 집진기⁴²⁾ 등을 설치해서 유해 물질을 제거하고 있다. 특수건강검진을 지원해서 이상이 있는 인원에 대해서는 이상 정도에 따라 인원 교체, 입원치료 등을 지원하고 있다.

| 군, 미세먼지 예방 및 관리 종합대책 추진 | 국방부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점차 악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 정책에 부응하고 장병들의 건강을 관리하기 위해 「군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을 수립하였다. 부대운영 분야, 군 내 미세먼지 배출량 감축 분야 등 총 2개 분야에서 13개 과제를 발굴하여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부대운영 분야의 주요 대책으로 2018년도에 공기청정기를 육군훈련소에 설치하였으며, 2019년도에는 각 군 신병교육대와 지휘통제실, 전 병영생활관 및 병원 병실에 확대 설치할 계획이다. 또한 전 병사에게 연간 보급하는 미세먼지 방지 마스크를 2018년 14매에서 2019년 18매로 확대할 계획이다.

군 내 미세먼지 배출량 감축 분야의 주요 대책으로 2005년 이전에 등록된 상용 지프와 버스, 트럭 등 노후 경유차량을 2019년까지 전량 교체할 계획이다. 또한 국방부분부와 소속기관은 업무용 승용차를 2019년까지 친환경차량으로 전량 교체하고, 각 군은 2028년까지 업무용 승용차의 50%를 친환경차량으로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압축천연가스(CNG⁴³⁾ 및 전기 차량은 시범사업 후 보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42) 국소배기장치 : 분진, 가스, 증기 등 발생물을 처리하는 장치
집진기 : 기체 속에 부유하고 있는 고체나 액체의 미립자를 모아서 제거하는 장치

43) Compressed Natural Gas

제6절 제대군인 지원 및 참전용사 예우 강화

국방부는 제대하는 모든 장병의 원활한 사회진출을 위해 전직교육과 취업지원 활동을 강화하고, 참전용사의 희생과 노고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또한 국가에 헌신하고 전역한 직업군인이 퇴직 후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도록 군인연금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1. 전역 예정 장병 취업지원 강화

| 의무복무장병에 대한 취업지원 | 국방부는 입대-복무-전역 후까지 군 복무 전주기를 아우르는 ‘청년 장병 취·창업 활성화 대책(청년장병 SOS프로젝트)⁴⁴⁾을 추진하고 있다.

1단계는 교육과 상담을 통해 장병들의 취업역량과 취업지원을 강화하는 것이다. 2018년부터 민간 전문상담관이 일선 부대로 직접 찾아가는 ‘진로도움교육’과 ‘1:1 취업상담’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장병들의 요구를 반영하여 2017년도에 시행한 병영멘토링과 부대순회교육을 진로도움교육 프로그램으로 통합하고 새롭게 개편하였다. 진로도움교육은 ‘진로지도반’과 ‘취업지원반’으로 구분하여 개인의 희망에 따라 교육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 진로탐색 및 설계와 정부 청년고용정책 사업 이해를 공통적으로 교육한 후 반별 맞춤형 교육으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2018년에는 연대급 부대를 대상으로 총 350회를 시행하고 2020년까지 2,000개 대대급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1:1 취업상담은 ‘취업지원반’을 이수한 인원을 대상으로 상담을 통해 기업과 채용을 연계하거나 정부 청년고용사업 알선을 지원하며 2018년 육·해·공군 26개 사·여단급 소속 장병 중 구직희망자 5천여 명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2020년에는 3만 명까지 교육수혜자를 확대할 것이다.

2단계는 전문교육을 통해 취업역량을 강화하는 것이다. 고용노동부와 협업하여 1일 또는 1박 2일 과정의 중소기업 현장 체험을 실시하고, 중소벤처기업부와는 중소기업연수원을 통한 취업역량 전문교육과 기술병과 간부 대상 창업역량 전문교육을 실시할 것이다.

44) 청년장병들에 대한 취·창업 활성화 대책으로, 의무복무장병들의 취·창업 역량을 강화하여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으로 연결하는 중소벤처기업부·고용노동부와 협업사업(SOS : Soldiers on SMEs & Startups, 청년장병을 중소벤처기업으로)

3단계는 1, 2단계를 거친 장병들을 대상으로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일자리 커플 매니저를 통해 우량 중소기업에 취업이 되도록 매칭하고 2단계의 창업역량 전문교육을 이수한 전역예정 장병 중 희망자는 중소기업부의 창업사관학교 단기프로그램을 연계할 계획이다.

| 중·장기복무자에 대한 취업지원 | 5년 이상 복무한 중·장기복무자의 연령은 30~40대로 생애 기간 중 지출이 많은 시기이므로 전직기간 확대, 전직교육체계⁴⁵⁾ 개선 등 맞춤형 전직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2018년부터는 이전의 연계 교육과 주문식 교육을 특성화맞춤형 교육⁴⁶⁾으로 통합하고, 수요자 요구를 반영하여 과정을 확대 시행하고 있다.

5년 이상 복무한 중기복무자들의 전역 후 진로와 방향 설정을 돕기 위해 각 군 보수교육과정에 복무 설계교육을 반영하여 초기에 진로를 설정하도록 유도하고, 전역 1~2년 전에는 진로교육과 기본교육을 이수하도록 하고 있다. 2017년부터는 중기복무자의 취업 지원을 위해 복무 연수에 따라 1개월에서 3개월의 전직 기간을 부여하였다. 그러나 1~3개월의 전직 기간은 현실적으로 부족하다는 의견을 반영하여, 2019년 이후에는 전직 기간을 3~7개월로 확대할 계획이다.

10년 이상 복무한 장기복무자에게는 진로교육을 전직교육기간 2~3년 전에 실시하고, 기본교육은 전직교육기간 중에 이수하도록 하고 있으며, 복무 연수에 따라 10개월에서 12개월의 전직 기간을 부여하고 있다. 또한 중·장기복무자들이 복무 중에 취업교육과 구인·구직 만남 행사, 해외취업설명회, 취업 아카데미 등 취업지원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보장할 계획이다. 2019년에는 부대 지휘관이 전역 예정자의 전직지원 기간 전이나 전역 6개월 전에 전직 준비상태를 확인하여 상급부대에 보고하도록 하는 '전직준비상태보고제도'를 검토할 예정이다.

| 국가직무능력표준(NCS)⁴⁷⁾ 기반의 군 직무 표준화 |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에는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기반으로 한 직무능력 중심의 채용이 점차 확산되고 있으며 교육기관은 교육과목을 국가직무능력표준 기반 과목으로 개편하고 있다. 군에서 수행하는 직무는 국가직무능력표준의 직무와 유사하거나 동일한 경우가 대부분이나 직무가 표준화되어 있지 않아 전역 후 사회에서 경력으로 인정받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국방부는 2022년까지 국가직무능력표준 기반의 직무표준화를 완료하여 장병이 전역할 때 사회의 동

45) 진로설계 → 진로교육(1박 2일) → 기본교육(4박 5일) → 컨설팅(온라인 또는 4박 5일) → 군 특성화맞춤형 교육

46) 군 기본교육과 컨설팅을 받은 사람이 취업과 연계하여 자신의 전문능력을 향상할 목적의 교육으로 군과 기업·단체와의 상호 협력하에 진행

47) 산업현장에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요구되는 지식·기술·소양 등의 내용을 국가가 산업 부문별, 수준별로 체계화, 표준화 (NCS : National Competency Standards)

중 분야에서 경력과 전문성을 인정받을 수 있게 하고, 표준화된 직무를 편제표에 반영하여 국가직무능력표준과 연계된 직무경력을 군 경력증명서⁴⁸⁾에 표기함으로써 군 복무 경력이 사회에서 학점과 근무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여 사회 활용성을 제고할 것이다. 이를 위해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인력공단, 병무청, 학계 등 민·관·군이 협의체를 구성하여 내실 있고 효율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도표 6-15] 군 경력증명서의 사회연계 방안



| 제대군인 일자리 확보 | 제대군인을 위한 군 내 일자리는 군수, 교육, 행정 등의 비전투 분야를 민간 인력으로 대체하거나 민간인력 채용을 확대하는 직위를 제대군인 적합 직위로 발굴하여 지원한다.

군 외 일자리는 정부 일자리 확대 로드맵에 따라 의무해경, 의무소방원의 대체인력 충원, 의무경찰 감원에 따른 경찰관 충원 등 공공일자리가 확대되는 곳에 제대군인들이 채용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와 협의하여 경력 채용과 군 경력 응시요건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민간 우수기업 및 단체들과는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제대군인에 대한 특별채용, 서류전형 면제 등의 혜택이 주어지도록 할 것이다.

좋은 일자리를 가진 기업과 취업을 연계하기 위해 중소기업부 기업인력 애로센터에서 인공지능 잡매칭과 일자리 커플 매니저를 통해 매칭을 지원하며, 관련 부처 합동으로 전역예정 장병 취업박람회를 매년 대규모로 개최하고 있다. 또한 대한민국 중소기업



2018년 전역 예정 장병 취업박람회(2018년 3월)

48) 군 경력증명서는 경력증명서를 전역증 대신 발급하기 위해 「병역법 시행규칙」을 개정(2018년 1월)하여 자신의 복무 성과 확대, 전역 후 취업기회 확대, 병사의 성실 복무 분위기 확산에 기여

업인 대회 등 제대군인 채용 분위기 확산을 위해 표창 및 감사장을 수여하고 고용협력을 위해 기업 최고 경영자 및 인사담당자 초청 간담회도 추진할 예정이다.

2. 군의 특수성이 반영된 연금제도 운용

| 군인연금제도의 특성 | 군인연금은 직업군인이 성실히 복무하고 퇴직하거나 심신 장애로 퇴직 또는 사망한 경우, 공무상 질병이나 부상으로 요양하는 경우에 본인 또는 유족에게 적절한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군인 및 유족의 생활 안정과 복리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군인은 전투나 위험한 직무 훈련에 참가하는 등 생명을 담보로 임무를 수행하며, 대부분 격오지나 전방지역에 거주하면서 작전 임무나 비상대기 등 열악한 환경에서 복무하다가 연령·계급정년으로 인해 생애 최대 지출기인 45~56세에 대부분 전역하게 된다. 이러한 군 복무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군인연금은 연금의 기본 목적인 노후 소득보장이라는 사회보험적 성격뿐만 아니라 조기 전역하는 군인의 생활보장적 성격, 국가를 위해 희생한 군인에 대한 국가보상적 성격을 동시에 띄고 있다. 또한 직업군인들이 전역 후 노후생활에 대한 걱정이 없이 군 복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선진국들도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여 다른 공적 연금보다 군인연금을 우대하고 있다.

| 군인연금제도 개선 | 2011년 5월 19일 이전에 퇴직하고 장애가 확정된 사람이 상이연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군인연금법」을 2017년 11월 28일 개정하였다. 또한 이혼 배우자의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재직 중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인 사람이 이혼한 경우에는 재직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누어 이혼 배우자에게 지급하는 ‘분할연금’ 제도를 반영한 「군인연금법 전부개정법률안」을 2018년 3월 국회에 제출하였다. 또한 선출직 공무원에 취임한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출자·출연한 기관에 임직원으로 채용되면 퇴역연금 및 상이연금 전액을 지급 정지하는 규정을 포함하였다.

| 장병 재해보상 강화 | 군인 재해보상제도는 군인연금과는 제도의 목적과 재원을 달리 함에도 1963년 「군인연금법」이 제정될 때부터 통합 운영되고 있어 공무 수행 중 발생한 군인의 재해에 대해 국가가 책임감 있게 충분한 보상을 제공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국민의 눈높이에 맞도록 보상수준을 확대하고, 군인 재해보상제도를 보다 현실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군인 재해보상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병사에 대한 장애보상금 대폭 상향, 순직유족연금의 보상수준 현실화 등 장병들에 대한 보상을 한층 강화하는 것이다.

3. 군 복무에 대한 예우 및 사회적 보상 강화

| 6·25 전사자 유해발굴⁴⁹⁾ | 국방부는 나라를 위해 희생한 전사자들의 넋을 위로하고 명예를 고양함과 동시에 유가족들의 오랜 염원을 해소하기 위해 2007년 유해발굴 전문기관인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을 창설하여 운영하고 있다. 계획운영, 조사, 발굴, 감식, 대외협력 5개 과, 8개 발굴팀에서 200여 명이 활동하고 있다.

2018년까지 총 11,551위(位)⁵⁰⁾의 유해를 발굴하였고, 44,428명의 유가족으로부터 DNA 시료를 채취하였다. 전사자 신원도 추가로 확인하여 131위를 유가족 품으로 돌려보내 드렸다. 6·25 참전용사와 유가족이 생존해 있을 때 좀 더 많은 유해를 발굴하기 위해 조직과 인력을 보강하고, 「유해발굴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발굴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도표 6-16] 연도별 유해발굴 현황

2018년 12월 말 기준, 단위 : 위

구 분	계	2000~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발굴유해	11,551	2,875	1,284	1,440	1,387	1,041	736	913	622	429	448	376
아군·경	10,204	2,233	1,143	1,328	1,300	989	671	809	561	387	420	362

* 유해발굴 누계 : 총 11,551위(아군·경 10,204위, 유엔군 18위, 적군 1,329위) / 미 DPAA 봉환 국군 유해 65구 포함

[도표 6-17] 유가족 DNA 시료 채취 및 6·25 전사자 신원 확인 현황

2018년 12월 말 기준

구 분	계	2000~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DNA 시료 채취	44,428	3,378	2,282	4,524	3,388	4,252	4,765	4,005	2,645	2,921	4,041	4,072	4,155
신원 확인	131	31	13	11	6	7	11	5	17	8	9	9	4

2015년 11월 제47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한미 양국은 6·25 전사자 유해발굴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미 국무부의 전쟁포로 및 실종자 확인국(DPAA⁵¹⁾)과 우리 국방부 간의 합의서(MOA⁵²⁾)를 체결

49) 6·25 전쟁 당시 전사하였으나 시신이 수습되지 못한 13만여 위(位)의 유해를 찾아 조국의 품으로 모시는 국가 차원의 호국보훈 사업

50) 군·경 10,204위, 유엔군 18위, 북한군 725위, 중국군 604위

51) Defense Prisoner of War/Missing in Action Accounting Agency

52) ①유해발굴 관련 상호 정책적 지원 제공, ②6·25 전쟁 시 사망자·실종자 위치를 파악하기 위한 자료제공 협력, ③양국 간 공동조사 및 발굴 시행, ④한미 연례회의 개최(공동관심사 논의, 협력보장) 등을 합의



하와이에 보관 중이던 국군 전사자 유해, 68년만에 조국의 품으로

결하였다. 2017년 6월에는 2017년 3월 충북 영동 지역에서 발굴된 미군 유해 1위에 대해 ‘미국 6·25 전사자 유해 봉환식’을 거행하였고, 2018년 3월에는 중국군 유해 20위를 중국으로 송환하였다. 2018년 10월 1일에는 국군의 날을 맞아 북한 지역에서 발굴된 6·25 전쟁 국군 전사자 64위의 호국영웅을 하와이에서 우리 국방부차관이 직접 인수하고 서울공항에서 대통령 주관하에 최고의 예우로 봉환행사를 거행함으로써 국가 무한책임 의지를 실현하였다.

6·25 전사자 유해발굴사업의 경험과 기술은 세계가 인정하는 수준에 이르러 2017년 9월에는 베트남 국가지도위원회 대표단 5명이 방한⁵³⁾하여 유해발굴에 대한 협업 사항을 논의하였고, 10월에는 호주 국방부장·차관, 국방총장 등 일행이 우리의 선진화된 유해사업의 식별, 탐지, 발굴 및 사후관리 등 유해발굴 노하우를 습득하기 위해 방문하기도 하였다.⁵⁴⁾

6·25 전사자 유해발굴사업은 해를 거듭할수록 증언과 제보자가 줄어들고, 국토개발로 인한 지형 변화 등의 이유로 유해발굴 여건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2018년 현재 10,204위의 군·경 유해를 발굴하였으나, 이 중 신원이 확인된 유해는 불과 1.3%인 131위에 그치고 있다. 전사자 직계가족이 줄어들고 있는 현 상황에서 유해의 신원 확인을 위해 전후 2~3세대와 국민의 참여 확대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이를 위해 주거지 전·출입 신고서 작성 양식지와 통계청 정기 인구조사 간 설문지에 유가족 관련 사항을 추가 작성토록 협조하는 등 6·25 전사자 유해발굴 관계협의회⁵⁵⁾를 통해 정부 각 부처와 협력하여 다양한 방법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국방부는 발굴 유해의 효율적인 관리와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정밀감식을 위해 2021년 완공을 목표로 신원확인센터 건립을 추진 중이다.

| 비(非)군인 참전사실 확인 | 국방부는 비군인 참전자들의 희생과 노고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참전 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참전사실 확인 심의위원회를 통해 비군인 신분으로 6·25 전쟁에 참전한 분들을 참전유공자로 등록하고 있으며, 1995년부터 현재까지 총 3만 6천여 명의 참전사실 확인서를 발급하였다.

[도표 6-18] 비(非)군인 참전사실 확인서 발급 누적 현황

2018년 10월 기준, 단위 : 명

구분	계	학도 의용군	노무자	국민 방위군	군속	유격대원	의용경찰	철도 공무원	강화청소년 유격대	청년 방위대	기타
현황	36,190	1,188	4,215	1,594	1,534	8,578	6,466	6,036	2,405	576	3,598

53) 베트남 1237국가지도위원회(소장 쩌픽중) 등 5명 방문(2017. 9. 11. ~ 15.)

54) 호주 국방장관(마리스 페인) 등 9명 방문(2017. 10. 12.)

55) 2009년부터 국무총리훈령 제647호에 따라 행정안전부 등 12개 부처 고위공무원 대상 매년 실시(위원장 : 국방부차관)

1995년 이후 축적된 6만 건의 자료를 데이터베이스(DB)화하여 관리하고, 비군인 참전검색시스템⁵⁶⁾을 구축하여 참전사실 확인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 참전유공자로 확인된 분들이 참전명예수당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수급, 국립호국원 안장 지원, 보훈병원 진료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앞으로도 국방부는 국가보훈처 등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 참전용사의 예우와 명예를 선양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다.

| 제2연평해전 전사자 보상 | 2002년 6월 29일 서해 해상에서 발발한 제2연평해전의 전사자들은 긴박한 전투현장에서 전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02년 당시 「군인연금법」에 ‘전사’에 대한 보상 규정이 없어 ‘공무상 사망’에 해당하는 보상금이 지급되었다. 그 후 제2연평해전을 계기로 2004년 「군인연금법」을 개정하여 ‘전사’에 대한 보상 기준을 마련하였으나, 정작 제2연평해전 전사자들에게는 적용되지 못하였다.

전사자로서의 합당한 예우를 받지 못한 제2연평해전 전사자들에 대하여 추가적인 보상 필요성이 지속 제기되었고, 제20대 국회 개원 후 관련 법률안이 발의되어 계류되어 오다 국방부가 적극적으로 노력한 끝에 2017년 말 국회의 의결을 거쳐 2018년 1월 16일 「제2연평해전 전사자 보상에 관한 특별법」이 공포되었다.

이후 보상금의 산정방법, 보상금 지급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한 시행령을 마련하여 2018년 7월 17일부터 「제2연평해전 전사자 보상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었다. 이에 따라 2018년 8월 6일 제2연평해전 전사자의 유족들에게 2002년 당시 수령한 보상금을 공제하고 전사자 1인당 1억 4,000만 원~1억 8,000만 원의 추가 보상금이 지급되었다. 앞으로도 국방부는 국가를 위해 전사하신 분들의 유족에게 최대한의 예우와 책임을 다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56) 참전사실 확인 자료를 즉시 비교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 시스템